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기획 · 제작 |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기사협회는 선박의 운항, 경영, 관리의 전문직업인인 해기사의 친목단체로서 해기사의 권익신 장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해기사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에 진력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54년 8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공저(共著)

- 김진권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백인흠 |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 •채병근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 •양희복 I 한국해기사협회 실장

머리말

해기사(海技士)는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전, 선박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합니다.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는 지정교육기관(해양·수산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의 교육과정)의 입학을 준비하는 중·고교 학생들과 재학생, 졸업생 및 일반인 그리고 승선 중인 해기사들에게 해기사가 진출 가능한 직업군을 안내하여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여 향후 진출 가능한 육·해상 직업군의 분류 및 성장 경로를 안내하기 위하여 한국해기사협회 주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책의 구성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 진출한 해기사들의 인터뷰와 이에 따른 자세한 성장경 로의 소개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해기사들이 각자 다양한 관심 분야별 직업군을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성장경로를 확인할 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첫 시도임에 의미를 부여하며, 각자가 목표하는 꿈을 이루는데 조 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회장님 이하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저(共著) 일동

발간사

친애하는 2만여 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각 교육기관 및 선원 관련단체의 예비 해기사 여러분!

그리고 오대양 육대주를 무대로 승선 중인 해기사 가족 여러분!

오늘날 해기(海技)직의 매력화 방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해기사(海技士)는 해운물류 산업과 수산업의 필수 인력으로서 선박 운항 이외에도 항만, 물류, 조선 등 각종 연관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기반 임에도 불구하고 육상과의 임금격차 축소, 열악한 근로여건, 가족·사회 등과의 단절된 생활 등으로 선원직의 기피현상 확대와 사기 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참(Charm) 선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선원의 날지정, 선원의 거리 조성,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초고속 인터넷 및 해상위성무선통신 활성화, 국민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한 선원직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해기사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사회적지위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이외에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 반대를 뛰어 넘어 예비역 제도의 확대 필요성 제기 및 이를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 '해사분야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및 해기사들의 학·석사 학위 취득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해사영어 교육체계 및 시험제도 개선,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 (Career Path)' 제작 등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서(書)는 예비해기사 및 기존 해기사들에게 승선경력을 갖춘 후 진출 가능한 육·해상의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여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안내서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격언처럼 잘 준비하여 제2의 IMO 사무총장 등과 같은 귀감이 될 수 있는 해기사들이 배출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와 성장경로(Career Path)'의 제작과 출판을 위해서 수고하신 집 필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도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해기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6년 7월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임재택

차 례

제1장	승선 분야 • 11	
	1. 해기사(海技士)	··· 13
	2. 항해시(선장)	22
	3. 기관사(기관장)	23
	4. 통신사(통신장)	24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25
	6. 소형선박 조종사	26
	7. 도선사	27
	8.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하는 사람	28
	9.해양플랜트 운항사(DPO-Dynamic Positioning Operator) ·····	29
	10. 해양플랜트 전기전자기사	··· 31
MIL 6	해운 · 항만 · 조선 분야 • 33 1. 검수사 ···································	35
	2. 검량사	
	3. 감정사	
	4. 용선중개인과 선박매매중개인	
	5. 운송주선인	
	6. 해운회사(국적, 외항, 내항)	
	7. 선박관리사(국내, 국외)	·· 47
	8. 항만하역업	49
	9. 위험물 안전관리자	·· 51
	10.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자	53
	11. 선박운항관리자	55
	12. 안전관리책임자	

	13. 총괄보안책임자	. 59
	14. 해운 대리점	61
	15. 조선업 관련 종사원	63
	16. 각 해양 관련 업체	65
제3장	해양 관련 협회 및 단체 • 69	
	1. 한국해운조합	· 71
	2. (사)한국선주협회	· 73
	3.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75
	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76
	5. (사)한국해기사협회	. 77
	6.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외 노조단체	. 79
	7. 해양 관련 국제기구(단체)	· 81
제4장	해양수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83	
	1. 해양수산직 공무원	85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90
	3. 해사안전감독관	92
	4. 해상교통 관제사	95
	5. 항만국 통제관	. 97
	6. 해양환경감시원	. 99
	7.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101
	8. 항만공사	103
	9. 해양안전심판원	105
	10. 대한민국해군	107
	11. 어업 관리단	109
	12. 한국어촌어항협회	111
	13. 관세청	113
	14. 기상청	115

제5장 기타 공공기관 • 117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 연구소	119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1
	3.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23
	4. 국립해양조사원	124
	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126
	6. 국립수산과학원 및 소속기관	128
	7.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30
	8. 해양환경관리공단	131
	9. 한국수자원공사	133
	10. 한국가스공사	134
	11. 한국석유공사	135
	12. 한국기계연구원	136
	13. 한국전력기술	137
	14. 한전 KPS 주식회사 ······	139
	15. 한국수력원자력(주)	141
THOTE	레야 그용 . 서그 미 경시 보아 . 149	
세0성	해양 교육 · 선급 및 검사 분야 • 143	
	1.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	145
	2. 해양·수산계 대학교 ······	147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9
	4. 선박안전기술공단	151
	5. 한국선급	154
	6. 해외선급	156
	7.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158
	8. Oil major 검사관 ·····	160
	9. 기국 검사관	162

제7장 | 법률(보험) 및 선박 금융 분야 · 165

1.	손해사정사(해상사고 보상 전문가)	167
2.	손해사정사 사무원(보조인)	169
3.	해상 전문 변호사	171
4.	해상 전문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원(사무장)	173
5.	관세사	175
6.	선박금융 전문가	177
7	하구선주상형보험조합	179

제 1 장 | 승선 분야

	1. 해기사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2. 항해사 (선장)
••••	3. 기관사 (기관장)
	4. 통신사 (통신장)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6. 소형선박 조종사
	7. 도선사
	8.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하는 사람
	9. 해양플랜트 운항사
	10. 해양플랜트 전기전자기사

1. 해기사(海技士)

해기사란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선박직원"이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 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3. 전자기관사
- 4. 통신사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 5.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 7. 소형선박 조종사

♣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의 자격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이 있을 것
-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 선박직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은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1의 3과 같다.
- ♣ 통상적으로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1. 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 지정교육기관

- 1. 한국해양대(3급), 목포해양대(3급), 부산해사고(4급), 인천해사고(4급) 상선면허
- 2. 수산계 대학(4년), 수산계 고등학교(4급) 어선면허
-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항상선·원양어선 3급, 내항상선 5급 등 3개의 해기사 양성교 육과정을 운영 - 상선, 어선면허
 - ※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참조

♣ 필기시험 합격 유효 기간

- 1. 1급~ 2급 합격 : 4년
- 2. 3급~6급, 전자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합격: 3년 (병역의무 기간 제외)
- 3. 과목 합격 : 2년 (2년 이내 전 과목 응시 시 과목 합격 무효)
- ♣ 진출 분야 해운 항만·조선 분야, 해양관련 협회 및 단체, 해양수산 국가기관 및 공공기 관, 기타 공공기관, 해양 교육 및 선급·검사 분야, 법률(보험) 및 선박 금융 분야 등.
- ♣ 관련 법규 선박직원법
- ♣ 관련 정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기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 14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선박직원법시행령 제5조의2 관련)

[별표 1의3]

<개정 2015.3.24.>

1. 항해사

받으려는	승무경력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선장 ·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2년	
1급	2급 항해사 또는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	선장 · 1등 항해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항해사	2급	어어나 어 뜨는 일어나 어우 컨텐그어요그 되는 주트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3년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5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3급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2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 · ·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3년	
항해사		해사 3급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메구본구 1전000분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4급 항해사 또는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3년	
3급	4급 운항사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항해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 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5년	
	4급	베스트스 500트 이사이 하지	함장 또는 부장	2년	
	항해사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5년	

받으려는		승무경력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5급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 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47	항해사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4급 항해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 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4년
	5급 항해사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4년
	6급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항해사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5급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3년
항해사	6급 항해사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1년
6급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항해사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함정의 운항	2년

비고

- 1. 5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 중에는 6개월 이상 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받으려는 면허가 3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 중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며,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포함된다.
- 3.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4.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 하 이 표에서 같다)
- 5.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 6.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이 표에서 같다)
- 7.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6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2. 기관사

받으려는	승무경력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기관장 · 운항장 · 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2년
1급	2급 기관사 또는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장 · 운항장 · 1등 기관사 및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기관사	2급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운항사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 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5년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3급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2년	
07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2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 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항사 조기가 추지령이 1천도00킬급이도 이사이 한점	기관장	2년	
		주기관 추진력이 1천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3급 기관사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 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5년	
	4급 기관사	조기과 출지력이 750키크이드 이사이 하저	기관장	2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5년	
	- 7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47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4급 기관사	기단시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4년	
기단시	5급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4년	
	67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E7	6급 기관사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5급 기관사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 1년시	6급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기관사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받으려는		승무경력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6급 기관사	6급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1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1년
	종돈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전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비고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2의2. 전자기관사

받으려는	승무경력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 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 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1년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1년		
	이상의 운항사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 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2년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전자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 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 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부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2년		
	5급 기관사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 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 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 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5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5년		

3. 통신사

가. 전파통신급

받고자	승무경력				
하는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_	전파통신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 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6월	
	기사이상	함정	또는 실습		
2급 통신사 산	전파통신 산업기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 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6월	
		함정	또는 실습		
3급	전파 통 신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40	
통신사 기능사 이상		함정	또는 실습	없음	
4급 통신사	제한무선 통신사 이상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없음	
		함정	또는 실습		

나. 전파전자급

받고자	승무경력				
하는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전파전자 기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	통신의 담당	3월	
통신사	이상	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또는 실습		
2급	전파전자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	통신의 담당	3월	
통신사	산업기사 이상	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또는 실습		
- 3급 통신사	전파전자 기능사 이상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4급	해상무선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통신의 담당	없음	
통신사	통신사 이상	선박	또는 실습		

비고

- 1. 가목 및 나목의 자격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어야 한다.
- 2. 무선통신 또는 통신의 실습은 선장 항해사 또는 운항사의 직무와 병행 할 수 있다.

4. 소형선박 조종사

받으려는	는 승무경력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소형선박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조종사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비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운항사

받고자	승무경력				
하는 면허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선장 ·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2년	
	2급 운항사,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박직원	4년	
1급 운항사	1급 항해사 또는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선장 · 기관장 · 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3년	
	1급 기관사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	선박직원	5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선장 ·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2년	
	07 0711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박직원	3년	
2급	3급 운항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 · 기관장 · 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3년	
운항사			선박직원	4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3년	
			함정의 운항	4년	
3급	4급 운항사, 3급 향해사	3급 향해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박직원	2년
			급 향해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선장 · 기관장 · 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2년
운항사	또는 3급 기관사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박직원	3년	
	3日 기단시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메구본구 200본 이정의 임정 	함정의 운항	3년	
4급 운항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				

비고

1. 받고자 하는 면허가 항해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항해사 또는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한하며, 받고자 하는 면허가 기관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기관사 또는 기관전문의 운항사에 한한다.

20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 2.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에 등급별로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
 - 가. 1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 나. 1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 다. 2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 라. 2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 마.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는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와 6월 이상의 기관당 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HLONE	승무경력					
받으려는 면허	자격	선박 또는 항공기	직무	기간	승선 시간	
중 수 등 등 등 등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 어선	선박	2년	_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직원	3년	_	
선박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_	
조종사			함정의 운항	3년	_	
	소형 수면비행 선박 조종사	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수면비행선박	선박 직원	_	200시간	
소형 수면 비행 선박 조종사	5급 항해사 이상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 어선	선박 직원	1년	_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또는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 · 어선		2년		
		베스트스 100트 이사이 하저	함장 또는 부장	1년	_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2년		
		수면비행선박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2년	_	

비고: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과 그에 따른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승무경력 외에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항해사(선장)

항해사(선장)는 국내·외 기준에 따라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하여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적·양하, 항해, 선박통신, 교육훈련, 안전관리 및 갑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항해사(선장)가 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항해사의 등급별 면허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항해사로 구분한다.

【 주요 업무 】

-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선장을 보좌하며, 선박의 항해당직, 입출 항보조, 화물 적·양하, 하역장비 운용 및 점검, 갑판부원 관리, 교육훈련, 선체점검, 갑 판장비 운용 및 점검, 항해장비 운용 및 점검, 해도 및 항해관련 도서 관리, 의약품관리, 소화 및 구명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신장이 승선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항 해사는 통신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며 각종 선박의 검사를 수검한다.
- 선장은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하며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를 수행한다.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통상적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후 면허를 취득한다.
- 면허 취득 후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따라 상위 면허를 취득한다.
 - "해기사" 내용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에 따라 연안수역과 원양수역에서 선박의 크기(총톤수)에 따라 승선]

22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3. 기관사(기관장)

기관사(기관장)는 국내·외 기준에 따라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기관실 내부 시스템의 정상유지를 위해 기관실 업무관리, 기관실 기기의 운용 및 주기적인 점검, 기기고장 시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관사(기관장)가 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기관사의 등급별 면허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관사로 구분한다.

【 주요 업무 】

-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하며 선박의 주기관(선박을 움직이는 추진 동력 장치) 및 보조기계(발전기, 보일러, 각종 펌프, 조수장치, 냉동기 등)를 포함하여 모든 기관장치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기관실 기기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며, 정박 중에는 연료, 비품, 소모품 등을 보충하는 일을 하며 규모가 큰 수리는 육상의 전문 정비업체에 위탁하기도 한다. 각종 선박의 검사를 수검한다.
-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선장을 보좌하고 기관부원을 통할한다.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통상적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후 면허를 취득한다.
- 면허 취득 후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따라 상위 면허를 취득한다.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선박의 기관부의 승무기준은 연안수역과 원양수역에서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은 선박의 크기 (총톤수), 어선외의 선박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은 주기관 추진력(킬로와트)에 따라 승선]

4. 통신사(통신장)

통신사는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과 재화의 보존을 위하여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조난·긴급·안전통신 및 일반통신을 운용하고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통신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통신사의 등급별 면허는 전파통신급 1급, 2급, 3급, 4급 통신사와 전파전자급 1급, 2급, 3급, 4급 통신사로 구분한다.

【 주요 업무 】

• 통신사와 통신장은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통신 및 방송장비의 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와 통신 송·수신 업무를 수행한다.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통상적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후 전파 전자급 면허(GOC, ROC)를 취득한다.

해기사면허 등급	국가기술자격증 구분	
1급 통신사	전파전자통신기사	1 ST Class GEC
2급 통신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2 ST Class GEC
3급 통신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GOC
4급 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ROC

• 통신사 면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통신사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는 무선종사자 자격(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을 취득해야 한다.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통신장, 통신사

[전파통신급의 승무기준은 선종별(여객선,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 어선)로 구분하고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어선외의 선박은 여객정원, 총톤수) 여부 및 총톤수(어선)에 따라 승선]

24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원양수역 또는 연안수역에서 계획된 항로에 따라 사람과 물자를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수면효과를 이용하는 수면비행선박을 안전하게 조종하는 사람을 말하며, 수면비행선박 조종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등급별 면허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와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로 구분한다.

【 주요 업무 】

•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수면비행선박의 안전항해를 계획·실행, 항해 기기 및 장비의 유지 관리, 화물의 하역 및 승객의 하선을 지휘·감독한다.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통상적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후 면허를 취득한다.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 발급 요건
 - 1.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4급 항해사 또는 운항사 이상 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로서 선박직원법에 서 요구하는 승무 경력을 갖춘 후 시험 합격
 -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 취득
 - 2.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5급 항해사 또는 운항사 이상 또는 수면비행선박 승무원으로서 선박직원법에서 요구하는 승무경력을 갖춘 후 시험 합격
 -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 취득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선장, 1등 항해사 (소형 및 중형 수면비행선박)

6. 소형선박 조종사

국내 기준에 따라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하여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적·양하, 항해, 선박통신, 갑판관리 및 기관의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형선박 조종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요 업무 】

• 소형선박 조종사는 소형선박(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에서 선박의 항해당직, 기관당 직, 화물 적·양하, 선체점검, 갑판장비 운용 및 점검, 항해장비 운용 및 점검, 소화 및 구명설비 관리 및 각종 검사 수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통상적으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발급은 아래와 같다.
- 1. 해기사 시험(필기) 합격과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2년)
- 2. 해기사 시험(필기 일부 과목 면제) 합격과 면허취득교육(2일)과 승무경력(4년)
- 3. 해기사 시험(면접 필기시험 전부 면제) 합격과 면허취득교육(3일)과 승무경력(4년)
- 4. 해기사 시험(필기) 합격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선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
- 면허 취득 후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따라 상위 면허를 취득한다.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선장, 기관장

(소형선박의 승무기준에 따라 연안수역과 원양수역에서 여객선, 여객선외의 선박, 어선에 종사)

7. 도선사

도선사(導船士, Pilot)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도선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도선사의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도선구별로 한다.

【 주요 업무 】

- 지정된 도선구의 항만이나 운하, 강 등의 일정한 도선구에서 입·출항하는 선박에 승선 하여 항해를 보조하거나 항만으로의 접근과 접·이안 및 입·출항을 보조·지원한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대한민국 선박 및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 천 톤 이상인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하다.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도선법 제5조(면허의 요건) <개정 2013.3.23>
 -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 도선사 면허의 기준은 1종 도선사(모든 선박 도선)와 2종 도선사로 구분한다.
- ♣ 관련 법규 도선법
- ♣ 관련 정보 해양수산부, 한국도선사협회, 한국해기사협회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도선사 (1종 도선사, 2종 도선사)

8.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하는 사람

수상에서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조종 및 위기대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를 조종하는 자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제1급, 제 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한다.

【 주요 업무 】

•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조종술과 항해술을 기반으로 선체, 기관 관리 및 위기대처 능력을 갖추어 개인 또는 상업용도의 수상레저기구를 운용한다.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결격사유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면허시험(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
 -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의 필기시험 면제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면허 중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
- 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조종면허 제1급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제2급 조종면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 요트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려는 사람
- 2. 요트조종면허 세일링 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 ♣ 관련 법규 수상레저안전법
- ♣ 관련 정보 국민안전처,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해기사협회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세일링 요트를 조종하는 사람

28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9.해양플랜트 운항사(DPO-Dynamic Positioning Operator)

해양플랜트 DP(Dynamic Positioning) 운항사는 해상에서 해양플랜트 근무 및 해양플랜트 지원 선박(OSV-Offshore Supporting Vessel) 등에 설치된 DP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OSV선박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사전에 설정한 항로를 따라 자동으로 운항하도록 하는 장치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양플랜트의 운영과 관리·안전분야의 전문가로서 해양플랜트의 운영, 건조 및 관리 업체와 관련된 해사산업 분야에 진출 할 수 있다. 현재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해양플랜트운영학과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양플랜트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해양플랜트 이외에도 DP System의 장착과 운영이 필요한 선박 - Cable Layer 선박(해저에 광(光) Cable, Power Cable 설치) 의 DP운항사로 취업이 가능하다.

【 주요 업무 】

- DP 시스템 운용
- DP 시스템 유지 보수
- 해양플랜트의 Toolpusher, Safety Engineer, Barge Engineer, Rig Engineer 운영·관리 요워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등학교(4급), 수산·해양계 대학교(3급)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3급)의 해상운송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항해사 또는 운항사 면허 취득
- 승선경력 소유자
- 군필자(남성의 경우)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능력 (TOEIC, TOEFL 등) 필수
- 해양플랜트 안전교육과정(BOSIET 등) 이수자

- DP 운항사 교육과정(DP induction, DP advance 등) 이수자
- 2개월 이상의 실습경력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해양플랜트운영학과(www.kmou.ac.kr)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www.seaman.or.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해양플랜트 DPO
 (해양플랜트, OSV, Cable Layer 선박)

• Junior / Senior DP 운항사

10. 해양플랜트 전기전자기사

해양플랜트 전기전자기사는 해양플랜트에 설치된 다양한 전기 시스템(고전압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하거나 복잡한 배전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관사·전자기관사 면 허를 소지하고 일반선박의 1기사 혹은 기관장 출신의 경력과 고전압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력과 자격증 소지자, 해양플랜트 혹은 해양플랜트 지원 선박(OSV-Offshore Supporting Vessel)의 승선경력자, DP System의 장착과 운영이 필요한 선박 - Cable Layer 선박(해저에 광(光) Cable, Power Cable 설치) 의 승무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해양플랜트 전기전자기관사로 근무할 수 있다.

【 주요 업무 】

- High Voltage 유지 ·보수
- Power Distribution 시스템 관리
- Power Generation 관리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등학교(4급), 수산·해양계 대학교(3급)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3급)의 기관공학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기관사 면허 취득
- 승선경력 소유자
- 군필자(남성의 경우)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능력 (TOEIC, TOEFL 등)
- 해양플랜트 안전교육과정(BOSIET 등) 이수자
- 해양플랜트 전기전자기사 교육과정(EEHA 방폭교육 등) 이수자
- 2개월 이상의 실습경력
- 관련된 정보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www.seaman.or.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해양플랜트 전기전자기사

제 2 장 | 해운 · 항만 · 조선 분야

1. 검수사	9. 위험물 안전관리자
2. 검량사	10.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자
3. 감정사	11. 선박운항관리자
4. 용선중개인과 선박 매매인	12. 안전관리책임자
5. 운송주선인	13. 총괄보안책임자
6. 해운회사	14. 해운 대리점
7. 선박관리사	15. 조선업 관련 종사원
8. 항만 하역업	16. 각 해양 관련 업체

1. 검수사

검수사는 수출입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선박에서 양하할 때 화물의 정확한 개수와 상태를 확인하여 화물의 인수·인도를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주요 업무 】

-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화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 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의 자료로서 검수원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증명하는 업무
- 화물의 품명, 하인(Mark), 포장형태, 개수의 확인 및 분류 업무
- 화물사고에 대한 파손 상태 및 파손 원인에 대한 책임한계 구분 업무
- 화물의 파손, 변질, 감소, 손상, 도난, 망실, 과부족 확인 업무
- 오적, 오양, 환적으로 인한 양하지 확인 업무
- 검수작업 보고서 제출 업무
- 컨테이너 봉인(Seal)의 파손, 멸실, 번호의 상위 확인 업무
- 컨테이너 봉인 파손 시 재봉인 및 세관공무원 확인 업무
- 컨테이너 봉인 파손에 의한 내장화물의 도난, 환적 확인 업무
- 관세청(세관)에 "하선 결과 이상 보고서"제출 업무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대학의 해상운송, 물류, 무역 및 승선학과 전공자
- 검수사란 검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수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관련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참조

• 업체정보는 한국검수검정협회 및 2016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 - 한국해기사협회 발간 검수검정업체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검수사

2. 검량사

선박회사·화주 및 기타 제 3자의 의뢰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선적화물의 용적·중량·상태·품질·손상의 정도를 검사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대량으로 운송되는 산적화물인 곡물, 광물, 유류 및 목재 등 운송 도중에 손상될염려가 적고 포장하려면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는 산적화물(Bulk Cargo)에 주로 검량사가 검량작업(Draft Survey)을 한다.

【 주요 업무 】

- 국제간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 중 액체화물, 곡물, 석탄과 같은 산적화물, 기체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의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 계산하여 공증적 증명을 발행
-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보고서(Surveyor's Report) 를 요청하며 제 3자의 검량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음
-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및 기타 제 3자 등의 의뢰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며 기초자료로 사용됨
- 선박의 용선 및 매매 시점에 본선에 있는 연료의 양을 실측하여 On/Off Hire Surveyor's Report를 제출한다.

- 대학의 해상운송, 물류, 무역 관련학과 및 해양·수산계 승선학과 전공자
- 검량사란 검량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검량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관련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참조
- 업체정보는 한국검수검정협회 및 2016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 한국해기사협회 발간, 검수검정업체 참조

• 검량사

3. 감정사

감정사는 선박회사·화주보험사 및 기타 제 3자의 의뢰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선적화물의 용적·중량·상태·품질·손상의 정도 및 해상손해에 대한 조사·검사·사정을 실시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감정사는 화물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해상사고로 인한 선체의 손상에 대한 부분, 즉 분손(Partial Loss), 전손(Total Loss)에 대한 본선의 손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고의 원인과 손상된 화물의 정도 및 피해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며 필요시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정도 발생하는지를 조사하는 감정전문가이다.

【 주요 업무 】

- 국제간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 중 액체화물, 곡물, 석탄과 같은 산적화물(Bulk Cargo), 기체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 계산하여 공증적 증명을 발행
-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Marine Surveyor's Report)를 요청함으로써 제 3자의 검량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음
-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및 기타 제 3자 등의 의뢰로 중립적 위치에서 화물 및 선박의 손 상 정도를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
-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 발급
- 손상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선주, 화주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감정인 외에도 P&I보험으로 고용된 감정인이 함께 참석하여 3명이 함께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대학의 해상운송, 물류,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 감정사란 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관련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참조
- 2016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 한국해기사협회 발간, 검수검정업체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감정사

4. 용선중개인과 선박매매중개인

용선중개인(Chartering broker) 및 선박매매중개인(Sale & Purchase broker; S&P broker)은 해운 중개업에 종사하는 중개인으로서 선주와 용선자 사이를 연결시켜 주고, 용선계약이 성약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운업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면 해상 화물 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 용·대선(傭・貸船)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운 중개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개인의 종류로는 선박매매중개인, 용선 중개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용선 중개인은 선주 측의 의뢰를 받아 화물이나 용선자를 중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선주 측 중개인(Owner's broker)과 용선자 측의 의뢰를 받아 선박이나 화물을 중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용선자 측 중개인(Charterer's broker)으로 구별할 수 있다. 용선 중개인이 어느 쪽에서 일을 하던 수수료(Commission)는 선주 측으로부터 용선계약가의 약 1.25%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 주요 업무 】

- 선주와 용선자 사이를 중개하여 연결
- 선박의 용선이 필요한 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일
- 해운시장을 확인하여 적당한 선박을 물색 및 필요한 제원을 확인
- 각 선박의 매매와 구입이 필요한 구매자를 연결
- 선박의 방선 및 검선 실시, 보고서 제출
- 구매 예정 선박의 적당한 선가 협의(Nego)
- 국내 도입시 필요한 선박의 수입통관 진행 및 선급, 각종 검사 및 수리 실시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유창한 영어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양 및 해운 관련 경험과 많은 국내외 인맥을 필요로 하는 직업

- 해양·수산계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 해사법학, 해운경영) 전공자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외국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
- 자세한 정보는 한국해운중개업협회(www.ksb.or.kr) 참조
- 업체정보는 2016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 한국해기사협회 발간, 한국해운중개업 체 참조

• 용선중개인(Chartering broker)

• 선박매매중개인(S&P Broker)

5. 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국제 운송화물의 컨테이너화에 따라 국제복합운송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크게 발달하게 된 일종의 운송대행인 제도를 말한다. 운송주선인은 국가 간 또는 대륙 간의 화물 이동과정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복잡한 운송 연락과정을 담당하므로 소량의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들은 운송 업무를 운송주선인에게 일임을 하게 된다. 운송주선인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 대리인으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업무를 위임받아 수탁화물의 질, 양, 유통 빈도 등에 따라서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주와화주 사이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화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 운송인은 화주의 화물을의뢰받아 운송하며 House B/L을 발행하고, 운송인은 선적을 의뢰한 선사에게서는 Master B/L을 발급 받는다.

【 주요 업무 】

- 운송 및 물류 관련한 컨설팅 및 의뢰
- 국가 및 대륙간의 최적화된 이동 수단 확인 비용, 기간 확인
- 수·출입 관련한 전체적인 서류 및 통관 대행 업무 진행
- 화주에게 House B/L을 발행 (항공의 경우 AWB-Airway Bill 발행)
- 선사에게 해상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Master B/L을 발급
- 기타 항공, 선박, 철도 등의 운송수단 및 비용, 시간, 안전요소들을 파악하여 화주에게 정보 제공
- 국제복합운송주선인(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으로 역할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 및 일반학과(국제물류, 무역, 경영, 경제) 전공자

- 각 포워딩 업체 및 물류 업체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및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물류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무역관리사, 유통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기사 출신 및 일반 공채
- 자세한 정보는 한국해운중개업협회(www.ksb.or.kr) 참조
- 업체정보는 2016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 한국해기사협회 발간, 한국해운중개업 체 참조

• 운송주선인

6. 해운회사(국적, 외항, 내항)

해운회사 혹은 선박회사(Shipping Company, ship's Owner)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Operator란 선박 운항업자를 가리키며,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해운회사에는 선박 대여업자(Owner)도 포함된다. 보통 선사(船社)로 지칭하며 선박의 매입 및 신조, 운항, 영업 등을 담당하며 이와 같은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를 해운회사로 일컫는다. 선사 얼라이언스(Alliance)란 운송기법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선사들의 동맹체를 일컬으며, 자사가 제공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노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타 선사와 손잡고 노선 및 화물운송 정보와 선박의 여유 적재공간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선복과서비스를 연계한다. 해운회사가 선원·선박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과 선박관리회사에 선원·선박관리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 주요 업무 】

- 각종 선박의 소유자로서 용선, 매입, 신조를 통하여 선대 운영계획을 수립
-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절한 화물의 확보를 위한 항로 개설
- 최적화된 항로 개설 및 화물 영업, 선박의 운항, 안전 관리, 선원관리, 선박관리
- 타 선사와의 선박공동운항 및 선복 공유
- 해운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 각종 운임 관련 협의(유가할증료 BAF, 통화할증료 CAF, 성수기 운임 할증료 PSS Charge 부과)
- 국내외 터미널 및 CY 운영
- 운송사와의 운송 계약 체결
- 각종 클레임에 대한 법적인 처리
- 수출입 화물에 대한 체화, 공매, 국고 귀속 처리, 대손처리 등의 회계 처리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관련학과(항해, 기관) 및 일반학과(법학, 경영, 경제, 무역, 보험) 전공자
- 각 해운회사의 정시, 상시 채용 시험 합격하여야한다.
- 승선경력 해기사 및 선·기장 출신 경력자
- 자세한 선사정보는 한국선주협회(www.shipowners.or.kr) 참조
- 업체정보는 2016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 한국해기사협회의 국적선사 및 내항해 운업체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으하티	ı
	' O E	1

• 영업팀

• 공무팀

• 컨테이너관리팀

• Charter Base 팀

• 법무팀

• 해무감독

• 운항감독

• 공무감독

• 신조감독

7. 선박관리사(국내, 국외)

선박관리회사(Company of ship management)는 선박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원관리, 선박수리, 선박 기자재 구입, 보험관리, 신조계획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관리하며, 그 대가로 선박소유자로부터 관리 수수료를 받는 전문 서비스회사이다. 선박관리사 중에서는 현지 외국인들의 국내외 선박에 공급하기 위해서 현지에 사무소 설치 및 별도의 교육훈련원을 운영 중인 선원전문송출업체도 있다.

【 선박관리사의 주요 업무 】

- 계약된 선사의 선박운항에 필수요소인 해기인력을 확보 및 교육
- 적정한 승선 및 배선, 교육 훈련, 건강관리, 각종 훈련 증명 관리
- 선박의 정기검사 및 각종 도크검사, 선박의 엔진 및 발전기 기타 선박 수리 관리
- 연료유 및 각종 소모품 관리
- PSC 및 각종 검사 대비
- 필요 시 외국선원의 공급을 위한 현지 사무소 및 교육원 설치 운영(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외)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 경찰) 및 일반학과(법학, 경영, 경제, 무역, 보험) 전공자
- 선박관리사(선원·선박)의 정시, 상시 채용 시험을 합격하여야한다.
- 승선경력 해기사 및 선·기장 출신 경력자
- 자세한 정보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www.kosma2020.or.kr) 참조
- 업체정보는 2016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 한국해기사협회 발간, 선박관리업체 참조

- 공무팀
- 각 선사 및 선단 관리팀
- 해무팀
- 선박관리팀

- 운항감독
- 공무감독
- 신조감독
- 해무감독

8. 항만하역업

선박들이 입출항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역이다. 선박의 운항시간을 단축시 키는데 있어서 본선의 하역설비 혹은 육상의 하역설비는 본선이 항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출항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선박의 적·양하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항만 하역 인력이라고 한다.

항만에서 처리되는 화물은 곡물, 원목, 유류, 자동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현재 대표 적인 화물의 운송단위로서는 컨테이너이다.

【 주요 업무 】

- 포맨(Foreman): 하역 작업의 총 감독관으로 선박의 일항사와 협의하여 하역 작업을 계획·총괄하여 진행
- 언더맨(Underman): 포맨 지시에 따라 장비 조작원과 컨테이너 부두의 상황실 통제원 과 무선연락으로 하역 작업 진행
- 신호수: 작동 장비 운전원에게 무전과 깃발 신호를 전달하여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는 역할
- 컨테이너 기중기 조작원: 컨테이너를 임시 야적 장소와 컨테이너 선박에 적·양하 하는 역할
- 컨테이너 플래너(Planer): 선사의 Cargo stowage plan에 의한 작업순서 및 기중기 배정 시간을 조정하는 일
- 컨테이너 부두 상황실 통제원: 상황실에서 컨테이너 플래너가 계획한대로 하역작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감독
- 컨테이너 부두 운영 관리자: 컨테이너 부두 전체적인 작업을 감독하고 하역 인력과 안 전을 관리하는 일
- 컨테이너 부두 정보화 기획원: 컨테이너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계획하는 일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 경찰)
- 해기사의 경우 항해사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Container planer, 운영·기획실 / 기관사는 정비·공무팀에 유리
- 각 컨테이너터미널 정시, 상시 채용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 승선경력 해기사 및 선·기장 출신 경력자 (부산신항만컨테이너터미널,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 울산, 포항, 인천, 광양의 각 터미널 홈페이지 참조)
- 자세한 정보는 한국항만물류협회(www.kopla.or.kr) 참조
- 업체정보는 2016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 한국해기사협회 발간, 한국항만물류업 체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Container planer

• 운영·기획실

• 정비/공무팀

9. 위험물 안전관리자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으로 초대형 유조선 등과 같은 위험물 운반선의 출입항이 많으며, 이를 취급하는 위험물 취급 부두 등은 우이산호 사고에서 보듯이 항상 유류 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박입출항법에 위험물 취급 시설물과 위험물 운반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즉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 전공자가 거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었으나, 해기사의 관심과 진출이 필요한 부분이다.

【 주요 업무 】

- 하역안전점검표에 의한 정기점검
- 점검실시 결과 결함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개선 여부 확인
- 하역작업 전 안전회의 참여, 적하계획서 검토, 선적 예정인 제품유 적합 여부 확인
- 하역작업 중 주요 위험 단계별 확인 지시(하역개시초기, 유창변경, 화물유종변경, 하역 완료단계 등)
- 위험물 취급 현장의 적절한 감독, 확인 및 법적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위험물 하역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실시
- 해상기상상태 변화에 따른 하역통제
- 위험물하역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 및 안전주의 사항 확인
- 기타 하역안전에 필요한 사항(IMO 또는 관련 국내규정)
- 위험물 분류 및 선박별 적정성 검토 및 위험물 취급 현장(제품출하부두/원유선/부이)

- 해양계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전공)
-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총톤수 3천톤 이

상의 위험물 산적 운반선에서 ①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 3년 이상, ② 2급 해기사 면 허 소지자로 2년 이상, ③ 1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 1년 이상 승선한 사람

- 일정기간 이상 3천톤 이상의 위험물 산적운반선 승선경력을 갖춘 해기사는 위험물 취급 회사 및 터미널 등(SK에너지, S-OIL, GS-칼텍스 등)에서 수시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관심 필요
-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업체도 증가 추세이므로 탱커 등 위험물 운반선 승선경력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자세한 정보는 주요 정유업체 SK에너지(www.skenergy.com), 에쓰오일(www.s-oil.com), GS 칼텍스(www.gscaltex.com)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위험물 안전관리자

• 로딩마스터(Loading Master) 선박의 하역을 담당하는 터미널 측의 감독관

10.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자

해사안전법에 의해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안전관리에 대해 외주를 주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 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 주요 업무 】

-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및 시행
-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
-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
-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
-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

- 해양계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전공)
- 승선경력을 통하여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ISM 등 경험을 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이수

- 선박안전관리 대행업 등록기준 :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종사원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적합증서 등을 획득,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 확보
- 해양관련 구인/구직 (www.seanet.co.kr / www.badasea.com) 참조

•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자

11. 선박운항관리자

선박운항관리자는 해운법에 의해 규정된 내항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기존의 해운조합 소속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었다.

【 주요 업무 】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 선장 등이 수행한 출항 전 점검의 확인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 여객선의 입항·출항 보고의 수리
-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 출항 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 기상상황의 확인
-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 여객명부의 보관 장소 확인
-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海圖)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 입항·출항 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逆呼出)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 정 이행 상태 확인

- 운항관리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 선박안전기술공단(www.kst.or.kr) 참조

• 선박운항관리자

12.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내항여객선 선사에 소속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즉, 해운법에 의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 및 안전관리를 전담할 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항여객선에 해기사 출신이 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 2016년 7월 1일).

【 주요 업무 】

•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 담당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해운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구분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 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
수 석 안 전 관리 책 임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 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 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 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해사안전법」제46조 제5항에 따른 안 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서 국 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 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법 제21조의5 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근 무한 경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해사안전법」제46조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법 제21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5급 항해사, 5급 기관 사 또는 5급 운항사 이 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 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선임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 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 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 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해사안전법」제46조 제5항에 따른 안 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법 제21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5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수석안전관리책임자 • 선임안전관리책임자

13. 총괄보안책임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선박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총괄보안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주요 업무 】

- 선박보안평가
-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 내부보안심사
-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건 등 보안상 위협의 종류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 및 보완
- 내부보안심사 시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시정
- 국제항해 선박 소속 회사의 선박보안에 관한 관심 제고 및 선박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 보안등급이 설정·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안등급과 관련한 정보의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전파
- 국제항해선박의 선장에 대한 선원 고용, 운항일정 및 용선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외국 항만의 보안등급 조정, 보안사건 및 국제항해 선박·선원에 대한 보안상 위협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거나 국제 항해선박 승무경력,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국제항해 선박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총괄보안책임자 • 선박보안책임자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14. 해운 대리점

해운 대리점(Shipping agent)은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의 하나로, 외국인을 포함한 해상 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탁을 받아, 선박에 의해 수송되 는 화물의 접수·장치(藏置)·선적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 다. 관행적으로 선박대리점업이라고도 하며 외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운대 리점업과 대한민국선박을 취급대상으로 하는 국내해운대리점업으로 구분된다. 국제해운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취급 대상으로 하는 국내해운 대리점업도 있다.

【 주요 업무 】

- 외국 대형선사와의 계약을 통한 국내 대리점 역할
- 화물의 집하를 통한 수입 수출 선적 관련 진행
- 선사를 대신하여 터미널, 운송사 및 각종 비용 집행
- 각종 실적 신고 및 서류 발급 업무
- 선박의 입출항 수속[(CIQ-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의 약칭)] 대행
- 선박의 급유(Bunkering), 청수(F/W) 공급
- 도선사 수배 및 선원의 승·하선 교대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승선 관련학과(해운경영, 법학, 무역학과, 일반학과, 외국 어 전공자)
- 해기사(항해, 기관, 운항) 경력자 우대하며 선사와 유사한 부서(운항, 수입, 수출팀, 대리점) 운영

- 자세한 채용정보는 각사의 홈페이지 및 구인광고를 참조
- 회원사와 관련된 정보는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www.isaak.or.kr) 참조
- 자세한 채용정보는 2016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 한국해기사협회 발간, 국제해운 대리점 참조

• 사무원

• 수입 · 수출 · 영업 · 운항 · 대리점 팀

15. 조선업 관련 종사원

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은 가공, 조립, 탑재, 의장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각각의 공정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승선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력적 입사를 통하여 조선소에 입사를 하게 되며 설계, 품질 및 검사, 시운전 분야에서 근무한다. 국내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이대표적인 조선소이다. 특히 해기사 출신들은 선박의 항해 시운전 및 기관운전요원 및 설계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 주요 업무 】

- 선박의 기본설계, 상세설계, 의장설계 등 선박 설계
- 제작도면의 작성 및 선박건조 과정 진행
- 각종 선주, 선급의 검사원들과 동행하여 검사 수행(품질관리)
- Oil Major, 선주 및 Class(선급) Surveyor의 지적사항 보완 및 보고
- 건조 완료 후 항해 시운전
- 진수 및 인수인계 전까지의 업무 수행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 (조선공학, 해양공학, 기계공학)
- 해기사(항해, 기관, 운항) 경력자
- 해기사 및 조선산업기사, 조선기사, 선체건조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자세한 채용정보는 각사(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의 홈페이지 참조

- 시운전부
- 계약부
- 선박의장부
- 기계의장부
- 품질경영부

- 기계 · 배관 설계부
- 기술영업부
- 생산부
- A/S부
- 사업기획부 등

16. 각 해양 관련 업체

각 해양 관련 업체는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는 해기사 출신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각 업체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각 업체별 업종 및 상호, 연락처는 한국해기사협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를 참조하면 된다.

【 각 해양 관련 업체 】

- 검수, 검량, 검정 업체
- 선박 수리조선소
- 선박 수리업체(개조, 확장, M/E, G/E 외)
- 선용품 공급업체
- 국내외 대리점
- 선박장비 Calibration 업체
- Bunkering 업체
- 급수(Fresh Water)업체
- Line Part 업체
- 예인선 업체
- 페인트 업체
- 해양플랜트 시공 및 설치, 보수 유지 업체
- 유창 청소 및 방제 업체
- 비파괴(MT.UT외) 검사 업체
- 선박엔진 및 발전기 제조업체 (Engine Maker)
- 선박용 윤활유 공급 업체
- 안전설비(SE) 관련업(Life Boat, 소화기, 방수복, 신호탄류, 팽창식 구명정, SOLAS

관련 外)

- 해양 관련 전산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 (시뮬레이션)
- 근무복/작업복/유니폼 제작업체
- 여행사(선원 승·하선 교대)
- 화물고박, 줄잡이, 폐기물 수거업체
- 전기(선박 및 육상설비) 업체
- 선식업체
- 각종 항해장비(갑판) 설치 및 수리 업체(Radar, ARPA, Steering Gear, Windlass, Winch, etc)
- 각종 선박설비 및 조선기자재 업체(BWMS, Boiler, Economizer, Governor, Cylinder Head, Liner, Turbo Charger, etc)
- Ship's repair broker (중국 등 해외)
- Container 제작 및 수리업
- Rope & Wire 제작업
- 특수선 제작업체 (Yacht, Canoe, Tug Boat, Barge, FRP 선박, WIG선, etc)
- After service 관련업
- Salvage 관련업
- Floating crane 업체(선박 블록, 중량물 운송 및 이동)
- 해운중개업
- 선박관리업
- 선박 부품 공급업
- 각종 기술 및 감독(Project Manager)용역업
- 고속엔진 부품 및 수리업
- 수중검사(In-Water Surveyor or UnderWater Survey) & 수중 Repair 업
- 항만시설 내 부두 Fender 설치 및 보수업
- 국내외 Power plant 설치 및 운영업
- 각종 해사도서 판매업
- 66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 해외 선박수리/부품/조선해양 기자재 서비스업
- 선박실내 인테리어 및 목공
- 배관 및 철의장 작업
- Crankshaft 생산 및 재생(Recondition, Reman) 업체
- 선박 관련 의장품·설비 제작 및 수리업
- ODME, Anchor, Anchor Chain, 선박용 펌프 및 Cargo pump, Seal, COW system, Hatch Covers, Azimuth thruster system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승선 관련학과 및 일반 학과(국제물류, 무역, 경영, 경제) 전공자
- 각 업체의 응시조건 및 채용시험, 기타 구인·구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도확인 필요
- 자세한 채용정보는 2016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 한국해기사협회 발간, 관련업체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각 해양 관련 업체의 전문직

제 3 장 | 해양 관련 협회 및 단체

	1. 한국해운조합
	2. (사)한국선주협회
	3.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5. (사)한국해기사협회
	6. 노조단체(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외)
••••	7. 해양 관련 국제기구

1.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여객선)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1949년 9월 21일 한국해운조합법(법률 제917호: 1961. 12. 30)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와 2,000여 조합원사의 자립기반조성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국내외 최신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조합원사의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해에 대한 각종 공제사업을 통한 연한해운 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 인천, 목포, 여수, 제주, 마산, 군산, 완도, 통영, 울산, 포항, 동해, 보령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 주요 업무 】

-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 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및 해양사고 구제사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
-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 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 해운업자에 대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에 관한 사업
-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해양·수산계 고교 및 대학의 승선학과(항해, 기관) 및 일반학과(해사법학, 해운경영) 전공자
- 한국해운조합의 채용은 정기 혹은 상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해운조합(www.haewoon.or.kr) 참조

【 직업 예시 】

• 경영본부 :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경영정보실 • 사업본부 : 공제사업실, 공제업무실

2. (사)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는 각 회원사(선주)들의 권익증진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리 나라 외항 해운업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며 그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54년 4월 (사)대한선주협회가 창립(1대 회장 석두옥 대한해운 공사 사장)되었으며 1960년 6월 현재의 (사)한국선주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현재에 이르 게 되었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무팀, 해무팀, 업무팀, 기획 조사팀의 조직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업무 】

- 해운정책, 세제, 금융 및 기타 관련 법규의 조사연구
- 정부, 국회 및 기타 업계 의견 및 주장을 개진 또는 건의
- 외항해운 선원의 수급대책 및 노사대책 추진
- 선원교육 및 관련법령의 개선, 선원·선박 경영의 향상 대책 추진
- 선박건조자금의 확보와 융자 및 각종 기금에 의한 사업자금 주선업무
- 외항해운의 관한 정부업무의 대행
- 외항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
- 외항해운에 관한 특수화물의 보호대책 및 기타 공동대책 추진
- 국제협약 및 조약, 해운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추진
- 해운시황 분석, 통계 및 실적업무
-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및 한국해사제단 관련 업무

- 해양·수산계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 해사법학, 해운경영) 전공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해기사 승선경력자

- 한국선주협회의 채용조건(서류전형과 면접)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선주협회(www.shipowners.or.kr) 참조

• 총무팀	• 업무팀
• 해무팀	• 기획조사팀

3.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해운법 제2조 제8호에 정한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 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선박관리업체 상호간 유대강화, 공동 복리증진 및 효 율적인 선박관리로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과 해운강국 도 약 및 국위 선양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업무 】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공동복리의 증진
- 선박관리업에 관한 시장자료 조사연구
- 선원수급에 관한 기본자료 조사 및 대책연구
- 선원 상호간의 부조 및 공제업
- 선박관리업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선원의 효율적 노무관리의 조사연구
- 정부관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조지원
- 선박관리업에 관한 관련사업 개척추진
- 선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의료보험사업
- 협회 소유 재산의 관리
-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해기사로서 승선경력자, 선사 및 선박관리사 근무자 우대
- 상시채용으로 각 채용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www.kosma2020.or.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업무팀 • 기획팀 • 해무팀

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선원직의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인 선원복지정책실현의 필요성과 선원 취업알선 및 복지업무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선원인력의 수급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0년 10월 1일 선원수 급협의회 명칭으로 설립(선원법 제142조, 법률 제1118호에 근거) 되었다. 1990년 10월 1 일 한국선원복지협회로 변경 후 2001년 6월 29일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력관리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와 통합하여 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로 변경되어 1본부 3부 1팀 1사무소 정원 26명 조직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주요 업무 】

- 선원복지 증진 사업: 선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선원회관 운영, 결혼예식장 제공, 외국인선원관리지원단, 휴양콘도, 장학사업
- 취업 및 고용정보 제공 : 국내외 선원취업 동향과 고용정보의 수집 및 분석(선원선박통 계자료 발행)
- 구인구직: 선원의 구직, 구인등록 및 취업알선
- 선원직업 안정: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직업 안정 업무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공공기관 및 상시채용으로 각 채용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
- 결원 발생에 따른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경영관리팀

• 고용지원부 (외국인선원관리지원단)

• 기획예산팀

• 남항사업소

• 복지사업부

5. (사)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기사협회는 선박의 운항, 경영, 관리의 전문직업인인 해기사의 친목단체로서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해기사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에 진력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54년 8월에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 주요 업무 】

-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해기사의 자질향상과 해기사 국가시험의 보도
- 해기사의 취업지원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원호
- 해사관계 제 법령 제정 및 개정의 건의와 보급
- 회보발간(해바라기) 및 전문도서 발간
- 해양사상의 보급
- 회원의 고충처리와 가족 상담
- 협회 소유재산의 관리
- 해양산업발전 및 해상근무환경 개선 등의 연구 활동
- 해기사 명예의 전당 인물 헌정, 상선선원의식 조사 및 발표 외
- 기타 본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승선 관련학과(항해, 기관, 운항, 해양경찰) 전공자
- 채용은 인원 결원시 공고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해기사협회(www.mariners.or.kr) 참조

• 기획 · 총무

• 홍보 · 편집

• 해기 · 조직

6.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외 노조단체

선원들의 해상노동조합 단체는 해상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단체로서 해 상산업 분야 노동자의 권익보호,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정부·대 사용자 단체와 투쟁하고 실현하여 해상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단체를 간략히 소개한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 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전국수산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원 양산업노동조합 등의 노동조합 단체가 있고,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소개 】

- 1946년 해상노동연맹으로 처음 설립
- 해운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7만 해상노동자들의 기업별·지역별·업종별 단위노조 총 57개로 구성된 연합단체
- 국내 유일의 국제운수노련(ITF)의 가입단체로 각종 국제 활동 및 서류 발급(편의치적 선 선원수첩(B/C)발급 업무 외)

【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소개 】

- 1981년 2월 1일 설립
- 선박관리업자의 관리선박에 승선하는 해외취업선원 및 국적상선선원을 주체로 전국 단위 직종별 조합
- 국적·외국적 선박 1,200여척의 선원 약 6,000명의 조합원

【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소개 】

- 2014년 8월 28일 설립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분리되어 상선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설립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해양·수산계 고교 및 대학의 승선 관련학과(항해, 기관, 운항, 해양경찰) 전공자
- 채용은 정기 혹은 상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채용정보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fksu.or.kr) 및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www.kssu.or.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정책본부, 홍보국, 재정본부

• 조직본부, 국제본부, 각 지사

7. 해양 관련 국제기구(단체)

해양 관련 국제기구(단체)는 각 국가간의 다양한 해양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해양법 및 법규를 제정하고 이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한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영어실력을 기본으로 전 세계 다 양한 인종과 민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정 신적·육체적인 무장이 필수이다. 특히 국제기구의 인턴이나 기간제 채용을 통하여 실력을 입증하고, 정직원이 되는 길을 추천한다.

【 1. 국제해양재판소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의 주요 업무 】

- 해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가 간 다툼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향력이 가장 큰 국제 법 기구
-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이용권 제한, 해양영토 및 어업 구역 설정 등의 지속적인 분쟁 발생 시 국제적 해결 기구
 - ▶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해양 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바로 그 기구이다

【 2.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주요 업무 】

- 전 세계의 조선 및 해운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
- 자세한 사항은 IMO(www.imo.org) 참조
-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해에 필요한 모든 국제 기준과 규칙을 정하는 기구로 "해양분야 의 UN"이라고 불린다.
- 선박의 구조·설비, 화물 선적 기준, 선원들의 교육·훈련, 해상충돌예방, 수색·구조 등 각 종 기준 규정
 - ▶ 2016~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임기택 사무총장(前,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IMO 사무 총장으로 직무 수행

【3. 국제수로기구 (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의 주요 업무 】

- 바다에서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필요한 해도를 통일하고, 회원국가들 간 정보교환을 위해 설립
- 해도에는 바다의 깊이와 지형, 해류와 조류의 성질, 해안의 지형, 항로, 표지, 등대, 항해에 필요한 각종 정보 기입

【4.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주요 업무 】

- 각국의 해양과 자원을 조사 연구하며, 해양오염을 감시하고 해양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
- 세계 해양과학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 ▶ 현재 위원장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변상경 박사가 직무 수행 중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해양·수산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 및 일반 학과(국제물류, 무역, 경영, 경제) 전공자
- 각 국제기구의 정기 및 상시, 인턴 채용시험에 합격
-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등 채용시험에 합격 후 해외 파견근무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공무원으로서 파견근무

• 국제기구 직원으로 파견(한국선급 등)

제 4 장 | 해양수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1. 해양수산직 공무원	8. 항만공사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 해양안전심판원
3. 해사안전감독관	10. 대한민국 해군
4. 해상교통 관제사	11. 어업관리단
5. 항만국 통제관	12. 한국어촌어항협회
6. 해양환경감시원	13. 관세청
7.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14. 기상청

1. 해양수산직 공무원

공무원은 정부 부서,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다. 해양수산직 공무원이란 해양수산부 및 해양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며 해양수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해양수산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외에 일반수산,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로, 어로, 항로표지시설 담당으로 나뉘고 각각 수산물 검사, 어업지도, 선박검사 및 해양사고 조사, 항로표지시설설치 및 관리, 해상교통관제, 해양측량 및 관측 등의 일을 맡아서 한다.

【 해양수산부 조직 】

- 1. 1차관 3실(■) 3국(●) 9관(43과 3팀), 소속기관(1차 21개, 2차 39개, 3차 8개, 총 68개) 해양수산부 장관, 차관 : • 장관 정책 보좌관 • 감사관
 -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 □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 해운물류국
 - 해사안전국
 - 항만국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3개): 주요업무는 수산물 수·출입 검역 및 검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서울, 인천, 평택, 장항, 여수, 목포, 완도, 제주, 부산, 통영, 포항, 강릉, 인천공항
 - > 국립해양조사원(3개): 주요업무는 해양조사를 통해 해도 발간, 항행경보, 해양정보 를 제공하며 남해, 동해, 서해 3곳 운영
 - ▷ 어업관리단(2개) : 어업질서 확립·지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외국인 어업관리를 하며 동해, 서해 2곳에 운영

- ▷ 국립해사고등학교(2개): 해양마이스터고를 통한 고급해기사 양성을 목표로 부산 해사고, 인천해사고 2개 학교 운영
-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수산해양인재 개발과 육성
-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성항법정보시스템 설치·운영, 해상무선표지소의 관리 및운영
- ▷ 각 지방해양수산청(11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4개): 각종 해양사고 조사 및 재판을위해 중앙 및 부산, 인천, 동해, 목포
- ▷ 국립수산과학원(5개) :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수산생물 품종관리 및 기술 보급을 위해서 동해, 서해, 남해, 남동부, 제주에 운영 중
- 2.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 공기업 5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타 공공기관 6 개(총 15개)
 - 1) 공기업 5개
 - ①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의 개발과 관리 및 운영
 - ②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의 개발과 관리 및 운영
 - ③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의 개발과 관리 및 운영
 - ④ 울산항만공사: 울산항의 개발과 관리 및 운영
 - ⑤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환경 개선사업 및 해양오염 방지 활동
 -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개)
 - ①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업무와 관련 기술 연구 및 개발
 -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인력의 교육 후련 및 해기사 시험 관리
 - ③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바다 숲 연안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
 - ④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과학기술정책 지원 및 R&D 기획·관리
 - 3) 기타 공공기관(6개)
 - ①(주)부산항보안공사: 부산항 북항 경비·보안 업무
 - ②(주)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 경비 보안 업무
- 86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 ③ 항로표지기술협회: 항로표지 제작과 관련 기술 연구 개발
- ④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연구 등
- ⑤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조사 연구
- ⑥ 한국해양조사협회 : 해저 지형·수로 조사 및 해양관측시설 관리 등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 운항, 해양경찰) 및 일반 학과 (경영, 경제, 법학, 행정, 회계학) 전공자
- 매년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직 공무원 공채 혹은 특별채용시험 합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시험정보는 해양수산부(www.mof.go.kr) 참조
- 채용 자격(2016.4 기준)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수로	해양수산서기 (8급)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 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4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소지자
	선박 관제	해양수산서기보 (9급)	■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자 격증 소지자 ■ 5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취득 후 승선경력 1년 이상인 자
해양 수산	일반 수산	해양수산서기보 (9급)	■ 해양 ·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제조 · 수질관리 · 식품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어업생산관리 · 수산양식 · 수산제조 · 수질환경 · 식품기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어로 · 수질환경 · 식품산업 기사 자격증 소지자 ■ 수산양식 ·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어로	해양수산서기보 (9급)	■ 어로기술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어로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 선박	해양수산주사보 (7급)	■ 대학에서 항해 및 기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대학 또는 해양 · 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 이상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 이상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 조선 · 기계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조선 · 일반기계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조선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6년이상 경력자
	선박 항해	해양수산서기보 (9급)	■ 5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취득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
	선박 기관	해양수산서기보 (9급)	■ 5급 이상 해기사면허(기관사) 취득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
	해양 교통 시설	해양수산 서기 (8급)	 ● 항로표지・토목・무선설비・전기・전기공사・전자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 항로표지・토목・무선설비・전기・전기공사・전자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관련분야: 해당 산업기사 관련업무) ● 항로표지・전기・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자(관련분야: 해당 기능사 관련업무)
	통신사	방송통신서기보 (9급)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해기사(통신사) 면허 소지자
해양 수산	해사안전감독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1.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y)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4.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해사안전감독관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1.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단체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일반선박
- 선박항해
- 선박기관
- 선박검사
- 수로
- 해양교통시설

- 선박관제
- 항만국통제관(PSCO)
- 선박관리
- 선박운항
- 해사안전감독관
- 해양사고조사

- 일반수산
- 어로
- 수산물품질검사
- 어업지도
- 해양측량 및 관측
- 등대관리직
- 통신사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지자체별로 항만법에 의한 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관리 권한의 위임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관공선의 운항 및 관리에 대한 업 무를 수행한다.

- ① 부산광역시(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 수 산자원과, 수산유통가공과
- ② 인천광역시(해양항공국): 항만공항정책과, 해양도서지원과, 항만공항시설과, 수산과
- ③ 경상남도(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물류과
- ④ 경상북도(동해안발전본부): 동해안발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관
- ⑤ 울산광역시(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 ⑥ 전라남도(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가공과
- ⑦ 전라북도(농축수산식품국): 해양수산과
- ⑧ 경기도(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 수산과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업무 】

- 해양수산현황 및 통계관리
- 해양관광자원(낚시공원 등) 개발사업
-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연안환경 보전사업 추진
- 공유수면매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연안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 연안습지 및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
-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 / 항만정책 기획·조정
- 육상항만구역 및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사항
- 지방관리항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사항
- 지방관리항 항만운영 기본계획 수립

90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 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 운항, 경찰학과)
- 해양수산 직렬의 선박항해(직류)의 경우 항해사 1급부터 6급까지 면허 소지자
- 각 지방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지자체 지방공무원 7급

• 지자체 지방공무원 9급

3. 해사안전감독관

내항 여객·화물선 및 원양어선에 대한 화물 선적, 항해 안전, 감항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선종별로 여객·화물선 감독관과 원양어선 감독관, 전문 분야별로 운항 감독관(항해)과 감항 감독관(기관)으로 구분한다.

【 주요 업무 】

- 운항 감독관: 선박운항, 화물선적, 평형수(Ballast Water) 관리 상태, 여객관리, 선원 비 상훈련 상태 등 항해 안전 분야 지도 및 감독
- 감항 감독관 : 선체, 기관·하역·소화·안전설비, 기기 정비상태, 정비 시스템 등의 적정성 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연간 및 월간 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 감독을 수행
- 불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 감독을 시행
- 감독 결과의 경중에 따라 개선명령서, 결함 시정·개선권고서를 발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필요 시 선박의 항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여객·화물선 분야(책임급)
-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운항분야지원자) 또는 기관장(감항분야 지원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

92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전관리책임자 경력을 포함) 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운항·감항분야 지원자 공통해당)

- 「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y)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운항·감항분야 지원자 공통 해당)
-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운항·감항분야 지원자 공통 해당)
- 여객·화물선 분야(선임급)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 (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운항분야지원자) 또는 기관장(감항분야 지원자)으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의 안전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 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을 포함)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운항·감항분야 지 원자 공통 해당)
- 「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y)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운항·감항분야 지원자 공통 해당)
- 원양어선 분야(책임급)
- :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선장(운항분야지원자) 또는 기관 장(감항분야 지원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원양어선 분야(선임급)
- :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선장(운항분야지원자) 또는 기관 장(감항분야 지원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양수산부(www.mof.go.kr) 참조

- 여객선 및 화물선 운항감독분야 '가'급 및 '나'급
- 여객선 및 화물선 감항감독분야 '가'급 및 '나'급
- 원양어선 운항감독분야 '가'급 및 '나'급
- 원양어선 감항감독분야 '가'급 및 '나'급

4. 해상교통 관제사

해상교통 관제사는 해상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주요 업무 】

- 해상 및 항만에서 선박 운항안전과 효율적인 해상교통을 관리하며 레이더나 폐쇄회로 모니터, 원격무전시스템 및 기타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이동을 지휘하고 감시한다.
- 선박의 위치, 항로, 속도 및 추정도착시간과 통행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진행과정을 감시한다.
- 선박의 출항인가, 선박교통량, 기후조건에 대해 조언하며 선박교통 관제소에 대한 정보를 전해준다.
- 관계자에게 사고, 조난 신호, 항해 위험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하여 보고한다.
- 인근 해양관제구역과 관할권내의 선박들과 무전 및 전화연결을 유지한다.
- 선박이동, 크기 및 구조에 대한 항해일지를 유지한다.
-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돕고, 사고를 예방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고지역으로 다른 선박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 대학의 해상운송(항해, 운항, 통신, 해양경찰) 관련학과 전공자
- 5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쌓은 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10주 정도의 관제사 기본교육을 수료한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해상교통 관제사

5. 항만국 통제관

항만당국(Port Authority)은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 연안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해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위해 항만당국에서 지정한 사람을 항만국 통제관(Port State Control Officer)이라고 한다. 이러한 항만국 통제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하여 국내 각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점검한다.

【 주요 업무 】

- 해양수산부 일반선박(7급)직 공무원으로서 선박검사관 업무 등 항만국통제 업무 수행
-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 식별
- 선박의 감항성, 인명의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사항 식별
-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 등을 통해 시정조치 요구

- 수산 해양계 대학에서 항해 및 기관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 이상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 관사) 면허 소지자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 이상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조선·기계·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조선 일반기계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조선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해양수산부(www.mof.go.kr) 참조

• 항만국 통제관

6. 해양환경감시원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감시하고 수질 및 오염원에 대한 조사활동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주요 업무 】

-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 선박의 오염방지 및 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점검을 위한 출입검사와 보고 에 관한 사항
-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 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
-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 선박 등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 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
-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 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 기사·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 명된 자
-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 해양수산부(www.mof.go.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해양환경감시원

7.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대한민국의 해양 경비 및 오염방제, 해상 구조·구난, 해상 수사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안전처의 직속 행정기관이다. 2014년 11월 19일 발족하였으며 각종 해양의 위험과 불법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양질서를 유지하며 범죄를 단속하고 해상구조와 구난, 독도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해상교통수단의 안전확보와 해양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 해양투기 및 해양오염방지, 외국어선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은 • 해양경비안전본부 • 중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완도, 목포, 군산, 여수해양경비안전서) • 남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왕도, 목포, 군산, 여수해양경비안전서) • 남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울산, 부산, 통영, 창원해양경비안전서) •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 동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속초, 동해, 포항해양경비안전서)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 해양경비안전 연구센터 •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업무 】

-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 경비 및 수호
- 해양오염 방지 및 오염방제 활동
- 해상 구조와 구난
- 해상 수사 및 독도 경비
- 어로자원 보호 및 해적행위 차단
- 외국어선 불법어로행위 단속
- 해상교통수단의 안전확보와 해양스포츠 안전관리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 (항해, 기관, 운항, 해양경찰) 전공자 및 해기사 경력자

- 의경, 해기사 특채(항해 및 기관) 함정요원, 운용, 정비, 해경학과, 응급구조 모집 및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본부장) 순(順)
- 자세한 시험정보는 해양경비안전본부(www.mpss.go.kr) 참조
- 채용 자격

구분	세부 지원 자격
	5급 해기사 이상(항해, 기관) 면허 소지자
순경 특채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요구된 신체조건에서 이상이 없는 자
	5급 해기사 이상(항해, 기관) 면허 소지자
일반 공무원 (서기보)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ハ)ユ)	요구된 신체조건에서 이상이 없는 자
	21세 이상 40세 이하,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기비/거이\ 중비세	요구된 신체조건에서 이상이 없는 자, 해기사 면허 소지에 대한 제한이 없음
간부(경위) 후보생	필수(6): 객관식-한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주관식-행정법
	선택(1) : 주관식-항해학·기관학 중 선택

- 해기사 순경 특채(항해, 기관) 함정요원
- 해양경찰학과(순경, 경장, 경사) 특채
- 해양경찰간부후보생(경위)

- 일반 공무원 서기보
- 의경 출신(순경)

8. 항만공사

항만공사(Port authority)는 항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3. 5. 29, 법률 제6918호)에 의거 설립된 항만공사가 각 해당지역 ● 인천항만공사(IPA) ● 부산항만공사(BPA) ● 울산항만공사(UPA) ● 여수광양항만공사 PA)에 운영되고 있다

【 주요 업무 】

- 각 지역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시설 조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등
- 각종 항만이용료 비용 징수 및 선석 운영 관리
- 각종 통계 작성 및 발표
- 각종 세미나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 (항해, 기관, 운항, 해양경찰) 및 일반 학과 와 해기사 경력자
- 각 지역별 항만공사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시험정보는 각 항만공사 홈페이지 참조

- 인천항만공사(IPA) www.icpa.or.kr
- 부산항만공사(BPA) www.busanpa.com
- 울산항만공사(UPA) www.upa.or.kr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www.ygpa.or.kr
- 채용 자격

채용 직위	세부 지원 자격
선박직(계약직)	• 4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만 18세 이상

•	경영본부(기	기회조정실)
	$C \subset T \setminus$	

- 운영본부(항만물류실)
- 건설본부(건설실)

- 국제물류사업단(전략기획실)
 - 개발사업단(재개발실)

9.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은 1961년 12월 6일 제정 공포된 해난심판법(법률 제813호)에 의해 설립된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을 두고 있으며, 중앙심판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지방심판원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목포시 및 동해시 등 4개의 주요 항구에 두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운영 중이다.

【 주요 업무 】

- 해양안전심판의 참여와 기록서류의 작성·보관
-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워인규명
-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의 집행
- 해양사고통계의 종합·분석
- 해양사건의 현장검증
- 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 제2심 사건의 심판, 소송(고등법원, 대법원) 관련 업무
- 관할이전 및 각하 결정
- 심판변론인 등록, 국선심판변론인 선정 및 관리
- 해양안전심판사례집 발간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 경찰) 및 일반 학과(법학) 전공자

- 해양수산부의 국가임용시험 합격하여야한다.
- 1급 해기사 면허 및 선,기장 출신 경력자
- 자세한 시험정보는 해양수산부(www.mof.go.kr) 참조
- 채용 자격

채용 직위	채용 직급	세부 지원 자격
		20세 이상인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 대상인자	
심판관	4급 일반 임기제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 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또는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 심판관	• 조사관

10. 대한민국해군

대한민국 해군(R.O.K Navy)은 1945년 11월 11일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창군 원로들이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육군·해군·공군 3군중에서 가장 먼저 창설하였다. 해군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번영을 위해 북한의 도발 억제 및 해양에서의 주권을 수호하고 지역 해양안보와 더불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 주요 업무 】

- 전쟁억제 :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것
- 해양통제: 필요한 시간과 해역에 대해 적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군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
- 해상교통로 보호 : 아측 상선의 이동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 군사력 투사: 바다로부터 상륙군, 항공기, 유도탄, 함포 등으로 지상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
- 국가 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 선양
- 국제 평화유지, 함정 외국 방문 등 국위 선양
- 해양탐색 및 구조 활동
- 어로 보호 지원해상테러/해적행위 차단
- 해난구조 및 해양오염 방지 등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 (항해, 기관, 운항, 해경) 전공자 및 해기사 경력자
- 해군 병사, 해군·해병대 부사관,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학사장교(OCS), 해군·해병 대 학군사관후보생(ROTC), 해군사관학교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시험정보는 해군본부(www.navy.mil.kr) 참조

• 채용 자격

채용 직위	세부 지원 자격
해군해병대 부사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 만 18 ~ 27세의 대한민국 남 · 여 해기사는 갑판, 조타, 전탐, 음탐, 전자, 보수 등의 직별에서 가산점 부여 해군 부사관 훈련(8주) 후 임관 (임관 후 남 4년, 여 3년 복무) 해병대 부사관 훈련(10주) 후 임관 (임관 후 남녀 4년 복무)
해 군 해병대 장교	항해, 기관, 운항, 해경 관련학과 학생 재학중 2년간 군사훈련, 졸업 후 소위 임관 해군ROTC: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 등 승선학과 -대학교 졸업(재학중 군사훈련 실시) 및 동시에 소위 임관 (임관 후 24개월 복무)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학사장교 OCS):4년제 졸업자 및 독학사·학사 학위 소지자 -10주 훈련 후 소위 임관 (임관 후 36개월 의무 복무) + 군장학생은 수혜기간 추가 해병대ROTC:한국해양대학교, 제주대학교 일반학과(임관 후 24개월 복무)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후 5년 복무 (항해기관잠수함해병대·항공·SSU 장교 및 정보, 병기, 시설, 정훈, 정보통신, 보급, 조함, 의무, 법무, 경리, 군종 등 기타 전문병과 장교 선택 가능)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해군 병사	• 해군 부사관	• 해군 장교	
		• 해병대 장교	

11. 어업 관리단

우리나라 영해의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를 위해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 단의 국가어업지도선으로 약 4만여 척에 달하는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을 지도한다. 또 배타적경계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감시하는 등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도 간의 지역 내 어업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어업지도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업무 】

- 우리나라 관할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관리
-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인 어업 규제 및 한일, 한중 어업 협정사항 수행
-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조업감시센터 운영
- 우리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조업 활동 지원(조난 구조, 의료 지원, 수산정보 제공) 등의 업무 수행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 운항, 해양경찰) 및 일반 학과와 해기사 경력자
- 자세한 시험정보는 해양수산부(www.mof.go.kr) 참조
- 채용 자격: 해양부산부 공무원 채용 참조

채용 직렬	채용 직류	채용 직급	세부 지원 자격
해양수산	선박항해	해양수산 서기보 (9급)	18세 이상('96.12.31. 이전 출생자) 5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취득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
	선박기관	해양수산 서기보 (9급)	18세 이상('96.12.31. 이전 출생자) 5급 이상 해기사면허(기관사) 취득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해양수산서기보(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통신)

12.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어항법에 의거 어촌어항 관련 조사·연구 및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사업, 어촌관광의 활성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 주요 업무 】

-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보화
- 어촌 및 어항 건설 어항관리의 연구 개발 및 보급
- 어촌 및 어항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 어촌 및 어항개발사업 수반 조사 설계 및 기술용역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어항청소선 관리운영 및 어항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수탁업무
- 연안수역 및 연근해 어장 등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

- 고졸 이상인 자, 5급 이상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자
- 자세한 시험정보는 한국어촌어항협회(www.fipa.or.kr) 참조
- 서류→인·적성 검사→면접
- 채용 자격

구분	세부 지원 자격
	5급 이상 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승선 관련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유효기간 내 있는 자
선박(항해)	18세 이상 병력을 필한 자
	채용 즉시 승선 가능한 자

구분	세부 지원 자격
선박(기관)	5급 이상 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승선 관련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유효기간 내 있는 자
	18세 이상 병력을 필한 자
	채용 즉시 승선 가능한 자
우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삭기) 보유자
	「선박직원법」에 의한 전파통신급 및 전파전지급의 통신사면허 보유자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선박직(항해사, 기관사)

13. 관세청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은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70년 8월 27일 재무부 세관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관세청 소속 국가공무원은 밀수 부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 주요 업무 】

- 물품의 수출입통관과정에서 밀수행위, 마약·총기류 및 산업폐기물 등의 불법반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여부와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단속하여 잘못된 수출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여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역할 수행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기관,운항,해양경찰) 전공자 및 해기 사 경력자
- 항해사(1~6급) 자격증 소지자, 기관사(1~6급) 자격증 소지자
- 만 18세 이상
- 자세한 시험정보는 관세청(www.customs.go.kr) 참조
- 채용 자격

구분	세부 지원 자격	
항만	•18세 이상(군필자, 면제자)	
(선박항해,선박기관)	•해기사 1~6급 면허 소지자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관세직 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 항해(선박항해직류에 한함)
- 선박기관(선박기관직류에 한함)

14. 기상청

기상청(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약칭: KMA)은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환경부 산하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0년 12월 27일 과학기술처 중앙기상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에 위치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상기상관측을 비롯하여 고층·해양·항공·레이더·지진 등 분류별 기상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28개 기구(본청 1, 국립기상과학원 1, 지방기상청 6, 기상지청 3, 국가기상위성센터 1, 기상레이더센터 1, 항공기상청 1, 기상대 12, 공항기상실 2)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주요 업무 】

- 기상관측망
- 지상기상관측망
- 고층기상관측
- 위성기상관측
- 기상레이더관측
- 낙뢰관측
- 해양기상관측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기관,운항,해양경찰) 전공자 및 해기 사 경력자
- 항해사(1~6급) 자격증 소지자, 기관사(1~6급) 자격증 소지자
- 만 18세 이상
- 자세한 시험정보는 기상청(www.kma.go.kr) 참조

• 채용 자격

구분	세부 지원 자격	
선박직	• 6급 이상 항해사 면허 소지자	
신략역	• 만 18세 이상인 자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선박직 공무원(항해, 기관)

제 5 장 | 기타 공공기관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 연구소	9.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 한국가스공사
3.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1. 한국석유공사
4. 국립해양조사원	12. 한국기계연구원
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13. 한국전력기술
6. 국립수산과학원 및 소속 기관	14. 한전 KPS 주식회사
7.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5. 한국수력원자력(주)
8. 해양환경관리공단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 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 연구소는 해양 전문 과학기술 연구·교육기관으로서 해양에 대한 새로운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바다에서 고급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 자원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며, 항만과 해안 경관을 포함하는 항도 인프라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창출하고자노력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 연구소 직원은 관련 분야의 학위, 지식, 실무경력 등이 필요하다.

【 주요 업무 】

-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 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
-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 연구
-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 해양관련 기기·장비기술개발과 검·교정
-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위탁 공동연구 및 기술제휴

【 부설 연구소 】

-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 극지연구소(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북극다산 과학기지)
- 남해연구소(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1·2호), 동해연구소,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 센터
- 인프라 운영부(태평양해양과학기지,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해양과즉·자료실 등)
- 기타 해외기지(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한·페루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KIOST-NOAA Lab., KIOST-PML Lab.)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등학교(4급·5급), 수산·해양계 대학교(3급)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3급·5급)의 해상운송 및 기관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항해사, 운항사, 기관사 등의 면허취득
- 승선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해양물리·해양화학·해양생물·해양지질 분야의 석·박사 학 위 취득
-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발시험에 합격
- 자세한 정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www.kiost.ac.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연구선 직원(아라온호 등)
- 해양물리학자, 해양화학자
- 해양생물학자, 해양지질학자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관련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국가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관련 분야의 학위, 지식, 실무경력 등이 필요하다.

【 주요 업무 】

-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컨설팅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정책의 비교연구
- 해운 항만 관련 국제물류 및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조사
- 개발원의 목적에 부응한 수탁연구 및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 물류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 보급
- 국내·외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해양산업관련 업계·학회·연구기관 및 정부와의 정보교 환 및 의견 수렴

- 승선 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해사대학, 승선학과, 항해/기관 대학원 및 해운경영, 법학, 항만물류, 해상보험 등 관련 분야 전공(석·박사 이상 우대)
-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발시험에 합격
- 자세한 정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해양연구원
- 해운해사연구원
- 미래전략연구원

- 수산연구원
- 항만연구원

3.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1968년 12월 26일 수산청 국립수산기술훈련소로 설립되어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해양·수산 인재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해양수산부의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 교육과 변화하는 해양수산환경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의 역량개발 교육을 시행하는 공기관이다.

【 주요 업무 】

- 해양수산부 비전 달성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 교육 훈련 운영
- 경력단계별 교육역량 강화 교육·훈련 운영
- 체계적인 해양수산인의 역량개발 교육 훈련 운영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해양수산부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
- 해양수산인재개발원(www.ofhi.go.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교육지원과 공무원

• 교육운영과 공무원

4.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은 1949년 해군본부 작전국 수로과로 출범한 이후 우리바다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해 바다의 도로 즉 선박이 항해하는 길인 수로를 조사·관리하는 업무 이외에도 해양영토(배타적 경제수역 EEZ-Exclusive Economic Zone,대륙붕 등)를 확정하고 해양자원 개발, 국가해양기본조사, 해양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군작전 정보를 제공, 우리바다의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해양정책 지원,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공기관이다.

[주요 업무]

- 바다의 도로 즉 선박이 항해하는 길인 수로를 조사·관리하는 업무
- 해도제작(종이해도 및 전자해도)과 항해정보제공, 암초 등 해저지형 관리, 항행통보· 경보서비스
- 해양영토(EEZ, 대륙붕 등)를 획정하고 해양자원 개발
- 국가해양기본조사, 동해 3차원 해저지형도, 독도와 이어도 해역관리, 동해표기 확산과 홍보
- 해양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국가 해양관측망, 해수면 상승률 분석, 수온 등 기후변화 감시, KOGA프로젝트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군작전 정보를 제공
- 작전 해역 지형조사, 작전지역 실시간 해양관측, 조류예측 정보시스템, 해상작전 시기 결정, 작전용 융합시스템 개발
- 우리바다의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해양정책을 지원
- 해안선 조사관리,항공라이다측량,어장정보조사,해양 생태, 환경조사

124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을 지원
- 물때 예보, 해수욕장 이안류 예·경보, 실시간 연안정보 제공, 바다 갈라짐 예보, 낚시용 물때표 제작, 요트·해수욕장도 제작
- 해양조사자료를 이용·분석하여 고도화된 해양 정보를 생산
-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해양기술 강국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등학교(4급·5급), 수산·해양계 대학교(3급)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3급·5급)의 해상운송 및 기관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항해사, 운항사, 기관사 등의 면허취득
- 해양수산부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
-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www.khoa.go.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조사선 직원(동해로호 등 3척)

• 공무원

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우리나라 해역의 해상교통안전과 선박 운항능률 증진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위치정보인 DGPS(Differential GPS)와 지상항법시스템인 LORAN-C(LOng RAnge Navigation) 측위정보를 제공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의 다변화와 전파교란등에 대비한 차세대 지상파항법시스템인 eLORAN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지금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관련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정책 및 기술동향을 수집·분석하여 국제적 흐름과 DGPS 측위정보를 해양에서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인터넷·DMB방송·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측량, 산림관리, 레저 활동 등 다양한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공기관이다.

[주요 업무]

-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설치 및 운영
- 해양 및 내륙에 DGNSS 서비스 제공
- 장거리무선항법의 국제협력체인 통제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극동아시아지역 Loran-C 서비스를 위한 코리아체인(GRI9930) 운영
- 해상무선표지소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해양기술 강국
- 전파간섭, 태양폭풍 등 GPS 신호 이상으로 인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통보
- 중앙사무소 1개소를 중심으로 해양기준국, 해양감시국, 내륙기준국, 내륙감시국, Loran-C 통제소 및 송신국을 운영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등학교(4급·5급), 수산·해양계 대학교(3급)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3급·5급)의 해상운송 및 기관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항해사, 운항사, 기관사 등의 면허

126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취득

- 해양수산부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
-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www.nmpnt.go.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공무원

6. 국립수산과학원 및 소속기관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수산생물 방역, 수산식품 품종관리 및 수산기술지도·보급지원을 위해서 1921년 5월 수산시험장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 해외 및 연근해 어장 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 개발, 자원조성 및 관리, 양식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등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변동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출전략품목 육성 지원,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 수산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공기관이다.

【 주요 업무 】

-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공학기술 개발
- 수산 증식 양식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
- 수산물 위생안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수산생물 질병 연구 및 방역
- 해양환경 조사 및 보존기술 연구
- 수산식품에 관한 품질심사 및 관리
- 수산기술 지도 및 보급사업 지원

【 소속 기관 】

- 동해수산연구소
- 서해수산연구소
- 남해수산연구소
- 남동해수산연구소
- 제주수산연구소

128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등학교(4급·5급), 수산·해양계 대학교(3급)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3급·5급)의 해상운송 및 기관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항해사, 운항사, 기관사 등의 면허취득
- 해양수산부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
-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시험조사선 직원(탐구20호 등 11척)

• 공무원

7.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되고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수립과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선정·평가,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5년 11월 설립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의 재단법인이며, 기타공공기관이다.

【 주요 업무 】

- 해양과학기술 수요조사, 분석, 평가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 해양과학기술관련 계획 수립 지원
- 개발된 해양과학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해양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 정부관련 부처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수행
- 기타 이사회 승인사업 및 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승선 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R&D 관리와 관계있는 경영 및 법학 등 관련 분 야 전공(석·박사 이상 우대)
-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연구직

8.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은 해양환경관리법 제 96조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녹색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5월 해양환경보전업무 수행을 위한 (가칭)해양환경관리공단설립 추진되었으며, 2001년 4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개편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중점사업으로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국제협력·연구개발, 해양사업을 하고 있다.

【 주요 업무 】

- 해양생태계 조사 관찰
- 해양생태계 복원
- 해양보호구역(MPA-Marine Protected Area) 관리
- 국가해양환경측정만 운영
- 해양기후변화 대응
- 항만 부유물 및 폐유 수거
-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 오염 퇴적물 정화 복원 사업
- 선진 해양오염방제 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 효율적인 방제선 및 기자재 운영
- 해양환경교육 및 인식 증진
- 방제 교육 훈련 강화
- 해양환경분야 국제 교류 및 협력, 연구개발 및 신사업 개발
- 항만예선사업 및 전용예선사업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학과 (항해, 기관, 해양학, 해사법학, 해운경영) 및 해기사 경력자
- Oil tanker 등 산적액체위험물 선박 승선경력자 우대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채용은 정기 혹은 상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해양환경관리공단(www.koem.or.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해상직(선박 항해, 기관)

• 일반관리직

• 선박관리직

9.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 주요 업무 】

- 다목적댐, 하구둑 및 운하시설 건설 관리
-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포함)건설 관리
-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
- 다목적댐 및 용수댐 내의 수질조사
-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및 물 분야 기술지원 교육
- 수자원의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 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기관계열) 전공자 및 경력자
- 기술 분야 응시과목 및 출제범위 : 기계(유체역학, 기계설계), 전기(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자통신(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디지털 전자회로)
- 한국수자원공사의 채용은 정기 혹은 상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연구직

10.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을 위하여 1983년 8월에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이며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및 그 부산물의 정제, 판매, 생산기지와 전국적인 가스공급망의 건설, 운영,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등을 담당한다.

【 주요 사업 】

- 천연가스 제조 공급과 부산물의 정제, 판매
- 천연가스의 생산기지 및 공급망 건설, 운영
- 천연가스의 개발(액화사업 포함), 수송 및 수출입
-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 천연가스 또는 그 부산물을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 청정합성연료 및 기후친화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관련 부대사업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 해양계 대학의 기관 관련학과 전공자 및 해기사 경력자
- LPG/LNG, Oil tanker 등 가스 및 산적액체위험물 선박 승선경력자 우대
- 국내 LNG 가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 승선경력자 수시 채용
- 한국가스공사의 채용은 정기 혹은 상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가스공사(www.gogas.or.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터미널 관리자 • 엔지니어

134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11. 한국석유공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1978년 12월 한국석유개발공사법 공포되어 1979년 3월 '한국석유개발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1월한국석유공사로 변경되었다.

【 주요 업무 】

-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
-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 에너지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 상기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 해양계 대학의 기관 관련학과 전공자 및 해기사 경력자
- LPG/LNG, VLCC/ULCC, Oil tanker 등 산적액체위험물 선박 승선경력자 우대
- 국내 KNOC 터미널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 승선경력자 수시 채용
- 한국석유공사의 채용은 정기 혹은 상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석유공사(www.knoc.co.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연구직 • 엔지니어

12.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은 기계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 신뢰성 평가, 시험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본원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부설 재료연구소가 있으며 첨단생산장비, 극한기계부품, 나노융합기계, 환경에너지기계, 기계시스템안전 등 5개 분야의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주요 사업 】

- 미래원천 기술, 산업핵심 기술, 사회난제 해결 기술 개발
- 연구개발 활동과 연계한 기계류 부품 공인시험 및 신뢰성 향상 기준 기술 개발 보급
-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 및 육성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승선 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관련 분야 전공(석·박사 이상)
- 극한에너지기계, 열공학적 극한기술, LNG·극저온기계기술, 환경기계시스템, 그린동력, 에너지플랜트안전 분야 등 기계 및 기관 관련 분야 진출 가능
-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한국기계연구원의 채용은 행정분야는 정기채용 시험, 연구분야는 통상 상시채용 시험을 실시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기계연구원(www.kimm.re.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연구직 • 행정직

13.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기술은 우리나라 발전소 설계를 위해 1975년 설립된 이래 원자력, 화력, 수력 및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 기술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의 기술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발전사업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자력발전소의 종합설계 및 원자로 계통 설계의 양대 핵심부문을 모두 설계하는 세계유일의 발전소 설계전문회사로서, 그 동안의 발전소 설계 및 기술개발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송배전 및 변전사업, 에너지 관련사업, 친환경사업 및 고속철도와 신공항 등의 국책사업 건설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으로 업무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주요 업무 】

- 원자력 발전소
- 화력발전소
- 환경설비
- 건설 및 사업관리
- 송변전 설비
- 소프트웨어 개발
-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

【 관계사 】

- 한국전력공사
- 한국서부발전(주)
- 한전KDN

- 한국남부발전(주)
- 한전원자력연료
- 한전KPS

- 한국남동발전(주)
- 한국중부발전(주)
- 한전산업개발

-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동서발전(주)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 해양계 대학의 기관 관련학과 전공자 및 해기사 경력자
- 계측제어, 터빈 등 기계 및 기관 관련 분야 진출 가능(특히 터빈선 승선경력자 유리)
-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한국전력기술의 채용은 일반적인 직원채용은 공개채용 원칙이지만, 해기사 경력자가 지원 가능한 계측제어 및 터빈 등 특수경력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전력기술(www.keoco-enc.com)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연구직

14. 한전 KPS 주식회사

한전기공으로 알려진 회사이며 한국전력공사가 전액출자한 자회사로서 우리나라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설비의 정비, 수리 업무를 전담하는 정비전문업체이다. 이 회사는 전국 6개 수력사업소(지점), 그리고 5개의 기술지원실에서, 14기의 수력발전설비와 전국 25개화력사업소, 그리고 5개의 기술지원실에서 총 174기의 화력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건설과 정에서의 시운전정비, 운전과정에서의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개수공사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발전소 불시고장 방지 및 설비의 가동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주요 업무 】

- 정비지원시스템인 맴스를 활용한 정비기록의 체계적 관리
- 고장실적 분석과 설비진단 결과 반영을 통한 고품질 책임정비
- 사후정비체제에서 예측진단장비 체제로의 전환
- 계획 예방정비공사 철저 시행
- 복합 화력발전소 운전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과학적인 공정관리 시행
- 사내 기술연수원 및 해외교육을 통한 정비기술 배양

- 수산 해양계 대학의 기관 관련학과 전공자 및 해기사 경력자
- 기술관리, 보일러설계, 증기터빈 엔지니어링, 발전기 설계 및 해석, 플랜트 제어시스템 등 기계 및 기관 관련 분야 진출 가능(특히 터빈선 승선경력자 유리)
- 기계 및 기관 관련 분야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인자에 한하여 경력채용으로 일등기관사(1/E) 이상의 경력자가 가능하다.
-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한전KPS의 해기사 경력자가 지원 가능한 특수경력 분야는 엔지니어링 전문경력직으로 분류하여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 KPS 주식회사(www.kps.co.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연구직 • 엔지니어

15. 한국수력원자력(주)

2001년 4월 2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회사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 설립되었다. 1978년의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 한빛원자력발전소, 월성원자력발전소, 한울원자력발전소 등 총 4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23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신고리 3~4호기, 신월성 2호기, 신한울 3~4호기가 건설중이며, 신고리5~6호기의 건설허가가 난 상태이다. 청평댐, 팔당댐 등 수력 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전력 공급의 약 32%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전 건설 및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업무 】

- 원자력발전/수력발전의 운전, 발전
- 신재생에너지사업
- 방사성 폐기물 사업
- 해외원자력발전소 건설
- R&D

- 수산 해양계 대학의 기관 관련학과 전공자 및 해기사 경력자
- 원자력 발전소 정비 및 발전소 엔지니어링 분야로 발전소 기계설비 유지 및 보수 등 기계 및 기관 관련 분야 진출 가능(특히 터빈선 승선경력자 유리)
- 기계 및 기관 관련 분야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자에 한하여 경력채용으로 일등기관사(1/E) 이상의 경력자가 유리하다.
-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수력원자력(www.khnp.co.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제 6 장 | 해양 교육 · 선급 및 검사 분야

1.	해양 · 수산계 고등학교
2.	해양 · 수산계 대학교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선박안전기술공단
5.	한국선급
6.	해외선급
7.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8.	Oil major 검사관
9.	기국 검사관

1.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해양·수산계 고등학교는 해운계 2개교, 수산계 10개 학교이며, 해양(해사)·수산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공 교과목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지식, 기술, 인성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를 보내는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을 세우고교과서와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며 더불어 시험 문제의 출제와 평가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현재 고민과 미래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준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주요 업무 】

- 해당 전공과목(항해·기관)의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
- 이를 위하여 교과서 및 영상, 현장방문을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효과 증대
-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올바를 가치관 및 미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 올바른 생활규범을 배우고 익히도록 솔선수범
-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취업요건 파악 및 대학진학 준비
- 시험문제 출제 및 평가
- 국내 해양·수산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사로 근무

- 해양·수산계 대학의 항해·기관 교직과정 이수자
- 대학에서 교원 과정을 밟아 중등교사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 국·공립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원 임용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 채용 자격
-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사고(//inm.icehs.kr) 및 부산해사고(//maritime.hs.kr) 참조

채용 직위	세부 지원 자격
중등학교 교사	• 해기사 자격증 필요 없음 • 4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해기품질평가 상의 조건)
 선박직 9급	· 4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학교에 따라 선발 기준이 다름)

• 교사	. Tk≑kil	
• 교감	• 장학사 • 장학관	
• 교장	* 895	

2. 해양·수산계 대학교

해양·수산계 대학교 교수는 해양·수산계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공 교과목을 가르치고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교재를 만들고 시험문제를 출제 및 평가하거나 학생들의 졸업 논문 및 석사, 박사 과정의 학위 논문을 지도하는 일을 한다. 아울러 자신의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그 연구 결과를 국내외의 학술지에 싣거나 관련 학회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기도 한다.

【 주요 업무 】

- 해당 전공과목의 교과목을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가르치는 일
- 대학 교재 집필 및 영상, 현장방문을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효과 증대
-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평가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 및 평가와 지도
-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한 연구결과물을 국내외 학술지 혹은 세미나 발표
- 학부생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 강의 및 이해도 평가
- 학부생의 졸업 논문 및 석·박사 학위 논문 지도
- 산학연 연구 프로젝트 진행 및 발표
- 외부연구용역의 수행
- 해당 학부 조교, 실습선 교관은 대학원 재학 혹은 석사 학위 취득자

【 전공과목 교수 】

• 항해, 기관, 해상보험, 해사법학, 해운경영, 조선공학, 공대 교수 등 다양한 전공 관련 분 야 진출 가능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해양 수산계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 전공자

- 교수 임용의 경우 국내·외 대학교에서 해당 전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 박사 학위 및 관련 논문을 평가하는 대학교의 교수 임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전남대학교, 군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부경대학교 외 다수
-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양대학교(www.mmu.ac.kr),
 한국해양대학교(www.kmou.ac.kr), 부경대학교(www.pknu.ac.kr),
 제주대학교(www.jejunu.ac.kr),경상대학교(www.gnu.ac.kr) 참조
- 선박직 채용 자격

채용 직위	세부 지원 자격
해양수산 7급 (선박항해)	• 2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3급 항해사 자격증 소지 후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해양수산 9급 (선박항해)	•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해양수산 9급 (선박기관)	•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교수직 채용 자격

채용 직위	세부 지원 자격
교수	• 3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학부 조교	• 시간강사	• 조교수
• 실습선 조교	• 전임강사	• 부교수
• 실습선 교관	• 겸임교수	• 정교수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은 선원을 포함한 해양수산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교육·훈련 및 선박운항, 해양환경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해양수산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IMO 회의 참석, 해양수산부 정책 연구, 해기사 국가 자격 시험의 공정한 집행, 초급해기사 양성, 국내외 해양플랜트 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근무하는 교수·교관·선박직 직원은 해양수산인력과 해양플랜 트인력의 교육·훈련, 안전교육 개발 및 운영, 승선교육을 위한 실습선의 운항 및 관리를 담 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수·교관·선박직 직원이 되려면 승무경력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요구하는 실무 경력과 지식이 필요하다.

【 주요 업무 】

-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시행 및 지원
- 선원정책, 해양수산 정책 등의 연구 및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 업무
- 해양수산 기술교육에 관한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 선박운항, 해양환경, 항만, 해운 및 어업기술의 연구 개발
- 산학연 연구 프로젝트 진행 및 발표
- 해양수산 기술교육에 관한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 해기사 국가시험 문제 출제 및 면접
- 오션폴리텍 과정을 통한 초급해기사의 교육과 양성
- 실습선 교육·훈련 시행 및 지원
- 실습선 운항 및 갑판의 보수 관리
- 실습선 기관 운용 및 기관실 기기의 보수 관리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 해기사 면허 취득 후 승선경력
- 의료 분야에 맞는 자격
-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www.seaman.or.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해양 · ·	수산 종사자	교육 교수
--------------------------	--------	-------

- 해양플랜트 종사자 교육 교수
 - 및 교관
- 해기사 시험 출제 교수
- 안전교육 교수 및 교관
 - (소화, 생존, 의료 분야)
- 실습선 선장 및 기관장
- 실습선 교수 및 교관
- 실습선 항해사
- 실습선 기관사
- 행정 교관

4.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1979년 1월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주요 업무 】

-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선박 의장품)에 대한 검사
-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선박 의장품)에 대한 도면 승인
-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 물건(선박 의장품)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확인
- 선박용 물건(선박의장품)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에 대한 검정
-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 기준의 연구 및 분석
- 선박의 설계 및 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
-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 법령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위탁하는 업무
-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업무 수행
- 그 밖의 동간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규정 하는 사업

- 수산 해양계 고교 및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 및 일반 학과 전공자
- 자세한 시험정보는 선박안전기술공단(www.kst.or.kr) 참조

• 채용 자격

직렬	전공	응시자격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 · 수산계 · 조선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 · 수 대행 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선체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수산계·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	
기술직	기관	7. 대학의 기관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기관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대행검사 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라. 단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제작기술사, 산업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	가. 대학의 전기 ·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기 ·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대행검사 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연-	구직	1. 행정기관에서 해사안전분야 8급 국가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해사분야 학사이상 소지자로서 공단 인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운항관리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산휴가 기간 포함) 이상인 사람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 3년(유급 휴가 기간 포함) 이상인 사람	

• 승진 경로

구분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행정직	행정원	주임행정원	선임행정원	책임행정원	차석행정원	수석행정원
기술직	검사원	주임검사원	선임검사원	책임검사원	차석검사원	수석검사원
연구직	_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차석연구원	수석연구원
운항관리직	운항관리원	주임운항관리원	선임운항관리원	책임운항관리원	차석운항관리원	수석운항관리원
승진년한	2년	2년	3년	4년	4년	_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기술직(선체·기관·전문)	• 운항관리직	• 일반직	

5. 한국선급

한국선급(KR)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급으로서 민법 제 32조(비영리 사단법인)를 근거로 1960년 6월 20일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인명과 재산의 안전 및 환경의 보호, 선박·발전설비 등의 육상설비 및 해상석유정제설비 등의 해상설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2015년 3월 기준으로 본부, 1실, 2원, 1단,1소, 34팀, 4개 지역 본부, 59개 서비스망 (국내14개, 해외45개)을 조직을 갖추고 있다. 선박의 운항과 해상보험 가입에 반드시 필요한 선급(Class)을 한국선급(KR)으로 신규 혹은 계속 유지하기 위한 선박과 그 부속물(선박의장품)이 검사 대상이며 국내 및 해외에서도 선박검사 업무를수행한다.

【 주요 업무 】

- 제조 중(후) 등록검사: 선박은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치수 및 공작 등에 관하여 제조과정 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한 검사로 도면승인, 재료, 기관장치, 하역설비, 공작, 제반시험, 복원성 시험, 시운전 포함
- 정기검사, 중간검사, 연차검사
- 프로펠러 축 검사 · 입거 검사 · 보일러 검사 · 계속 검사
- 임시검사 개조검사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선박 의장품)에 대한 검사
-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인명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 기준의 연구 및 분석
- 선박의 설계 및 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
-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 법령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위탁하는 업무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해양·수산계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 조선공학과) 전공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3급 해기사 면허, 승선경력 3년 이상, 조선기술사 자격증 및 전공자
- 기술직 선박검사원(선체, 기관, 조선) 및 국내외 본사 및 각 지점에서 다양한 업무에 종사
- 한국선급에 실시하는 년1회의 정기공채 혹은 상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선급 홈페이지(www.krs.co.kr) 참조
- 채용 자격

채용 직위	세부 지원 자격
기술직 선박검사원	・3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승선경력 3년 이상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검사계약	• 검사기술직(선박검사원(선체, 기관, 조선)
• 기술계약	• 기술개발직
• 행정계약	• 행정직
• 기술전임	• 한국선급 해운거래정보센터 등

6. 해외선급

한국선급(KR) 이외에도 국내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급이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외국 선급으로 • 디엔브이 지엘 선급협회(DNV·GL) • 로이드선급협회아시아(Lloyd's) • 미국선급협회(ABS) • (재)일본해사협회(ClassNK) • 프랑스 선급(B.V.)에 해기사가 많이 진출한다. 외국선급도 한국선급(KR)과 하는 일은 유사하며 한국선급 이외에도 국내 해외선급 입사도 승선경력을 갖추고 도전해볼 만한 곳으로 추천한다.

【 주요 업무 】

- 제조 중(후) 등록검사: 선박은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치수 및 공작 등에 관하여 제조 과정 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한 검사로 도면승인, 재료, 기관 장치, 하역설비, 공작, 제반시험, 복원성 시험, 시운전 포함
- 정기검사, 중간검사, 연차검사
- 프로펠러 축 검사 · 입거 검사 · 보일러 검사 · 계속 검사
- 임시검사 개조검사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선박 의장품)에 대한 검사
-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 기준의 연구 및 분석
- 선박의 설계 및 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
-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 법령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위탁하는 업무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해양 수산계 대학의 해당 관련학과(항해, 기관, 조선공학과) 전공자

156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 4년제 대학 졸업자, 3급 해기사 면허, 승선경력 3년 이상, 조선기술사 자격증 및 전공자
- 기술직 선박검사원(선체,기관,조선) 및 국내외 본사 및 각 지점에서 다양한 업무에 종사
- 각 외국선급에 실시하는 정기공채 혹은 상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 자세한 채용정보는 각 선급 홈페이지 및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한국해기사협회 발간) 참조
- 채용 자격

채용 직위	세부 지원 자격
기술직 선박검사원	・3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승선경력 3년 이상

• 선박검사원(선체,기관,조선) • 행정직

7.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위험물의 선박운송 및 저장에 따른 재해예방과 기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기준제도의 연구개발 및 성과보급에 힘쓰고, 위험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적재, 수납, 용기, 포장 등의 위험물 검사를 제공하여 위험물의 안전한 선박운송과 해운, 항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1989년 12월 15일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를 설립하였다. 1990년 2월 16일 정부 권한이던 위험물 검사업무를 위임받았으며 2005년 9월 22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으로 개칭하였다.

【 주요 업무 】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험물에 대하여 용기, 포 장, 표시, 표찰 및 적재방법 등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
- 위험물 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시, 표찰 및 컨테이너 수납방법 등의 적합여부에 관한 법정검사
- 위험물의 분류, 용기포장, 표시, 표찰 등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 2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검사
-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시 등이 국제규정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수납검사를 받는 경우는 불필요
- 위험물 선박 운송에 관련하여 정부 또는 기타 수요에 대한 용역 및 시설의 제공과 자문 업무 등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 산적액체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교육, 재교육
- 국제 해상 위험물 규칙(IMDG Code) 개정 및 번역판 발간, R&D, 국제회의 개최 및 전 문가 파견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고교 및 대학교 승선학과 졸업자 및 승선경력자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 Chemical, LPG/LNG, Oil tanker 등 산적액체위험물 선박 3년 이상 해기사 승선경력자 우대
- 승선경력자의 경우 검사원 견습 3개월 후 정식 검사원으로 선임
- 영어점수 TOEIC 800~900점
- 위험물 및 고압가스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 경력자 우대
-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홈페이지(www.komdi.or.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위험물 검사원

8. Oil major 검사관

메이저 석유회사가 여러 차례 유조선 사고의 경험을 통해 유조선 사고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고 더불어 메이저 석유회사의 명성에도 막대한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자사 화물의 안전한 선적, 수송, 양하를 위해 양질의 안전한 선박을 용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70년 4월 OCIMF((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를 결성하게 된다. OCIMF는 1980년대 초반에 안전한 선박의 검증을 위한 메이저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1989년에 유조선 검사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지침서에 근거하여 유조선 등을 검사하기 위해 메이저 석유회사에서 지정한 검사관을 Oil major 검사 관이라고 한다.

【 주요 업무 】

- VIQ(Vessel Inspection Questionnaire)에 따라 유조선 등의 선박을 검사
- 화물의 안전한 선적, 수송, 양하를 위한 회사의 선박관리 시스템 점검
- 선박의 증서 및 서류, 승무원 관리, 항해, 오염방지, 선체상태, 화물 및 평형수 시스템, 계류장치, 통신, 기관실과 조타실 등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주요 설비 및 시스템 점검
- 국제협약의 준수여부 점검
- 승무원의 자격 검증
- 검사 진행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해양계 고교 및 대학교 승선학과 전공 후 승선경력자
- Chemical, LPG/LNG, Product, Oil tanker 등 산적액체위험물 선박 승선경력 요구
- Senior officer engineer로서 경력 및 영어 회화 능력
- OCIMF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160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 Oil major 검사관

9. 기국 검사관

기국 검사관(Flag inspector)은 항만국 통제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해양 사고 방지, 인명 보호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을 점검한다. 항만국 통제관은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반면, 기국 검사관은 해당 기국에 등록된 선박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선박의 기국에서는 기국 검사를 위해 자국의 검사관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국가에서 일정 자격이 있는 기국 검사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국 검사관은 파나마, 마샬아일랜드, 라이베리아 검사관 등이 있다.

【 주요 업무 】

- 자국에 등록된 선박을 점검하여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 식별
- 선박의 감항성, 인명의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사항 식별
-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 선박의 증서 및 서류, 승무원 관리, 오염방지, 선체상태, 계류장치, 통신, 기관실과 조타실 등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주요 설비 및 시스템 점검
- 국제협약의 준수여부 점검
- 승무원의 자격 검증
- 검사 진행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수산 해양계 고교 및 대학교 승선학과 전공 후 승선경력자
- 각 기국에서 요구하는 승선경력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경력(검사, 선박안전관리 등)
- 파나마의 경우 5년 이상의 해상경험, 해기사 면허, 교육증서 등 요구함
- Senior officer · engineer 경력 및 영어 회화 능력 요구

162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 파나마 기국검사관(www.classibs.org)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한국해기사협회 발간, 선급협회 부분) 참조

• 기국 검사관

제 7 장 | 법률(보험) 및 선박 금융 분야

1. 손해사정사(해상사고 보상 전문가)
2. 손해사정사 사무원(보조인)
3. 해상 전문 변호사
4. 해상 전문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원(사무장)
5. 관세사
6. 선박 금융 전문가
7.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1. 손해사정사(해상사고 보상 전문가)

손해사정사(해상사고 전문)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해상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수와 보험금을 계산하여 정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과 관련법규에 합당한지를 판단 후 피해액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정하게 된다. 보험가입자와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정확히 계산하도록 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사의 감정보고서(Marine Surveyor's Report)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진다.

【 주요 업무 】

- 해상사고로 인한 해상보험 사건 발생 시 조사를 통한 사고의 손해액수와 보험금을 정하는 일
- 보험약관과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보험가입자와 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
- 화물, 선박, 운송기기, 화재 등 해양사고와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 해상사고로 인한 선박의 수리 및 상가 비용 등의 실질적인 집행과 조사

- 대학의 해상운송, 경영학과, 금융보험, 세무학과, 수학과, 통계학 관련학과 전공자
-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재물손해사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야 한다.

- 재물손해사정사(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안내
-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위탁 수행)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 합격 후 일정기간 수습
- 고용손해사정사(보험사업자에 고용)와 독립손해사정사(보험사업자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로 활동
- 응시자격: 1차 시험은 제한없으며,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 손해사업업무 5년이상 종사 경력자, 타 종목 손해사정사 등
- 시험일정 : 1차, 2차 시험 각각 1년에 1회(재물손해사정사는 영어성적 필요 : 토익 700 점, iBT 71점 이상)
- 시험과목 : 1차 시험(객관식 4지선다형)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 사정이론
 - 2차 시험(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합격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재물손해사정사 통상 40명 선발)
-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www.fss.or.kr/fss/kr) 참조

|--|

2. 손해사정사 사무원(보조인)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사무원(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손해사정사는 1인당 2인 이내, 독립손해사정사는 1인당 5인 이내의 사무원(보조인)을 둘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사무원(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 및 경력을 쌓아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

【 주요 업무 】

-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 그 밖의 손해사정사의 사무 보조

- 자격 요건
-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 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
- 보험업법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한국손 해사정사 협회)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분야 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4년제 대학교 보험 관련학과 졸업자
- 해기사는 통상 보험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므로 1차 시험 합격 또는 연수과정을 거쳐 진입
- 자세한 사항은 한국손해사정사회(www.kicaa.or.kr) 참조

	• 검량사	• 감정사	• 손해사정사 사무원
--	-------	-------	-------------

3. 해상 전문 변호사

변호사로서 선박 사고나 운송계약, 기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받은 고객의 변호를 진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현재 해양대학의 항해계열 출신 항해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 후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전공과 승선경험을 살려서 대형법률사무소의 해상전문 변호사,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사내변호사 또는 개인사무소 개업하여 활동 중이다. 그 이외에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사내변호사, 해운회사 사내변호사 등으로 진출도 가능하다.

【 주요 업무 】

- 일반적인 법률상담 및 서비스
- 선박의 각종 해양사고(Sea Protest) 발생에 관한 법적 변론인 업무
- 선박의 용선계약에 대한 분쟁
- 선박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인 분쟁
- 선원의 인적과실 및 민·형사상의 법적인 분쟁과 변론
- 대형 선박회사 법무팀 근무하면서 선박회사에서 발생하는 국내외의 법적인 업무 담당
- 해양관련단체(선급, 항만공사)의 전문 변호사로 근무

- 대학의 해상운송 관련학과 전공자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해상 전문 변호사로 특성을 살려서 업무에 임하기 위해서는 승선학과 졸업 및 승선경력(1항사 혹은 선장 경력)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 대학의 법대 혹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과정을 이수하여 선박의 승선경력과 경험을 갖추는 방법도 있다.

-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 양성되는 해상 전문 변호사는 공무원(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등), 해양 관련단체(선급, 항만공사 등)의 사내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참조

• 변호사

4. 해상 전문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원(사무장)

해상 전문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원(사무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해상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전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해상 전문 영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및 자료 조사까지 수행한다. 통상법률사무원은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는 직원을 말하며, 변호사, 법무사와 함께 재직하면서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일명 사무장이라 호칭하지만 국장, 실장 등의 직급을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주요 업무 】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법률 관련 전문가의 감독하에 관련 업무 보조하고 처리
- 의뢰인에 대한 상담, 법률문제 접수 및 변호사 등 보조하기 위한 관련 기록과 자료 조사 및 수집, 필요서류 작성
- 법률서적, 재판기록, 수사기록 등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
- 해상 사건에 대한 해상 전문 영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및 자료 조사
- 필요시 해상 사건에 대한 사건 수임 업무

- 대학의 해상운송 관련학과 전공자
- 승선학과 졸업 및 승선경력(일항사 혹은 선장 경력)을 갖추는 것이 좋으며, 추가로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획득하면 유리하다.
- 특별한 자격제도는 없으나, 법학전공자 또는 사법시험 유경험자가 유리하다.
- 각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률사무원 채용 공고를 내고 있으나, 해상 전문 법률사무소는 상당수가 인맥을 통해 추천되고 있다.

• 해상 전문 변호사

• 해상 전문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원

5. 관세사

관세사는 화물(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업무를 대리하여 수출입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며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므로 일반인의 이해가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가 과세 가격을 확인하여세액을 계산하고 관세청에 수출입 통관 신고를 한다. 특히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가공 후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관세 환급 과정 또한 관세사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 주요 업무 】

- 일반적인 수출입 물품 통관 관련 상담 서비스
- 제품의 HS code 분류에 따른 관세 확인과 납부
- 수출입 신고 및 통관 진행
- 관세 환급 업무
- 각종 수출입 진행시 발생하는 관세청과의 소송 업무 대행
- 각 관련업체 (선사, 화주, 물류업체) 소속의 전문 관세사로 근무
- 관세직 공무원(세관)으로 진출
- 합동, 개인 관세사 사무소 설립 및 운영

- 대학의 해상우송,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학, 회계학, 법학과 관련학과 전공자
- 관세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관세사 자격시험(년 1회 1차, 2차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선박의 운항을 담당하던 항해사는 수출입에 관한 무역영어 및 무역실무 등에 친숙하여 업무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시험정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www.hrdkorea.or.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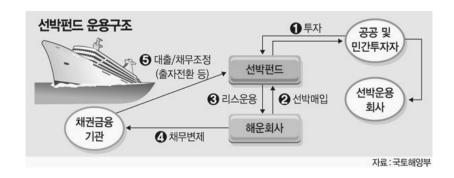
• 관세사

6. 선박금융 전문가

선박금융전문가는 선박회사 혹은 선박 투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선박 건조 자금을 모으고 운용하는 전문가로서 실제 대형선박의 건조 혹은 중고선 도입에 투입되는 비용은 막대하므로 선박회사에서 직접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선박회사는 선박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선박투자회사를 통해서 조달하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펀드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펀드를 선박 건조 및 운항에 따른 이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선박금융 전문가는 해상운송 시장 상황 및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해운시장을 예측하여 투자 대상인 선박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투자자를 모으고 조성된 펀드를 운영 및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 주요 업무 】

- 선박회사로부터 선박건조에 필요한 선박, 선종, 기타 선박제원 확인
- 투자대상인 선박의 해운시황 (선가, 해상물동량, 해상운임, 기타 운영비) 확인
- 선박투자자들에게 선박투자펀드를 설명 및 모집
-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선박건조 및 항로에 투입하여 운영수입 획득
- 이자, 선박운항경비 등의 비용을 제하고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금융과 투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
- 대학의 해상운송, 경영학, 경제학, 금융학, 보험학, 수학, 통계학, 세무학, 회계학, 법학 과 관련학과 전공자
- 외국 대학 수학 후 진입 : 예) 영국 City University London의 Cass Business School에서 선박금융 전공
- 국내 관련 회사 : (주)국제선박투자운용, 세계로 선박금융(주), 캠코선박운용(주), KSF 선박금융(주), 한국선박금융(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국제선박투자운용(www.kmaringroup.com)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선박금융 전문가

7.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은 선박 소유자, 용선자 기타 선박운항업자가 선박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실시하고 그 조합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국내 선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P&I 보험은 선체보험과 더불어 선주의 위험을 담보하는 양대보험의 하나로 해외 P&I Club 가입으로 연 1억달러 이상의 보험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중소형 선사를 중심으로 불만족과 고율의 보험료, 보험 인수거부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1999년 2월 5일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2000년 1월 6일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이 설립되었다.

【 주요 업무 】

- 해상위험의 담보와 클레임의 처리 및 관리, 보증의 제공
-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선주가 부담하게 되는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 선원 및 여객 등의 사상 또는 질병에 대한 책임
-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제거비용
- 선박충돌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
- 부표, 잔교, 해저전선, 어구 기타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 기타 선박운항으로 인하여 선주 등이 부담하여야하는 P&I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과 비용을 담보
- COFR(Certificate of Financial Responsibility-재정책임증명서) 발급
- 해사클레임 처리방안 조언
- 해양수산항만관련 정보제공
- 관계법령의 재개정관련 정보

- Blue Card 정관 발급
- 세계 각처에 600여 곳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인을 선임하여 사고처리 에 대한 조언
- Korea P&I club의 재보험자가 제공하는 보증서는 해외 P&I club 보증서와 동등하게 제공 및 통용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 해양계 대학의 해당 관련 학과(항해, 기관, 해사법학, 해운경영) 전공자 및 해기사 경력자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 채용은 정기 혹은 상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야한다.
- 자세한 채용정보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www.kpiclub.or.kr)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재무관리팀, 계약팀, 마케팅팀

• 클레임팀, 리스크관리팀

발간정보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 (Career Path)

초판 찍은 날 | 2016년 7월 12일 인쇄 **초판 펴낸 날** | 2016년 7월 20일 발행

기 획: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Korea Marine Officers' Association)

발행인: 임재택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발행처: (사)한국해기사협회

주소 : 위4882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4

해기사회관 5층

전화: (051) 463-5030~2 | 팩스: (051) 463-9297

E-Mail: kmoa@mariners.or.kr | Web: www.mariners.or.kr

인쇄처: 세종문화사 (051) 463-5898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해기사협회에 있습니다. 신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 (사)한국해기사협회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싣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